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76406

2014年　8月

碩士學位論文

학교폭력의 대책으로서 경찰다이버전에 관한 연구

朝鮮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鄭　惠　隣

학교폭력의 대책으로서 경찰다이버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e Diversion as a Response to School Violence

2014 年 8 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鄭 惠 隣

dCollection @ chosun

학교폭력의 대책으로서 경찰다이버전에 관한 연구

指導敎授　　김 종 구

이 論文을 碩士學位 申請論文으로 提出함

2014 年　　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法 學 科

鄭 惠 隣

dCollection @ chosun

鄭惠隣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委員長　朝鮮大學校　敎 授　윤 일 홍　印

委　員　朝鮮大學校　敎 授　김 종 구　印

委　員　朝鮮大學校　敎 授　이 원 상　印

2014 年　5 月　　日

朝鮮大學校　大學院

dCollection @ chosun

目 次

ABSTRACT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제2장 학교 폭력의 일반론 ····· 4

제1절 학교폭력의 개념과 특징 ····· 4
1. 학교폭력의 개념 ····· 4
2.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 6
3. 학교폭력예방법의 규범적 성격 ····· 8
4.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 ····· 12
제2절 학교폭력의 원인과 유형 ····· 15
1. 학교폭력의 발생원인 ····· 15
2. 학교폭력의 유형 ····· 18
제3절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실태 통계분석 ····· 22
1. 우리나라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통계 분석 ····· 22
2. 현행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 33

제3장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 다이버전 체제 ····· 39

제1절 경찰다이버전의 개념과 필요성 ····· 39
1. 부정적인 낙인효과의 방지 ····· 39
2. 경찰 다이버전 개념의 제 1 요소 ····· 40

dCollection @ chosun

3. 경찰 다이버전 개념의 제 2 요소 ·····42
4. 제1요소와 제2요소의 관계 ·····43
제2절 외국에서의 경찰 다이버전 ·····45
1. 미국 ·····45
2. 영국 ·····49
3. 일본 ·····50
제3절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경찰 다이버전 운영의 검토 ·····54
1.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 다이버전 법적근거의 마련 ·····54
2.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경찰 다이버전의 실무상 인정되는 범위65

제4장 경찰 다이버전의 문제점과 방향제안 ·····68

제1절 운영상 경찰다이버전의 문제점 ·····68
1. 경찰다이버전의 문제점 ·····68
2. 경찰의 전문성과 전담인력의 부족 ·····69
3. 관계기관의 시스템 미비 ·····69
제2절 운영상 경찰 다이버전의 방향제안 ·····71
1.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다이버전의 필요성 ·····71
2.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 다이버전의 한계 ·····73

제5장 결 론 ·····75

참 고 문 헌 ·····77

dCollection @ chosun

도 표 목 차

<도표-1>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23
<도표-2> 피해 응답률(학교급·성별) ·····24
<도표-3> 피해응답 건수 별 ·····24
<도표-3> 피해 후 생각 ·····25
<도표-4> 가해 응답률 ·····26
<도표-5> 가해행위의 원인 ·····27
<도표-6> 학교폭력의 방관비율 ·····28
<도표-7> 학교폭력의 원인 (부모들의 입장에서) ·····29
<도표-8> 학폭위의 횟수 및 심의건 수 ·····30
<도표-9> 피해학생 보호조치 건 수 ·····30
<도표-10>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조치 건 수 ·····31
<도표-11> 경미 소년범 처리 절차도 ·····66

표 목 차

<표-1> ’12년 운영 성과 ·····66
<표-2> ’12년 지역별 학교전담경찰관 배치현황 ·····67
<표-3> ’12년 학교전담경찰관 주요 활동성과 ·····67

dCollection @ chosun

ABSTRACT

A Study on the Police Diversion as a Response to School Violence

Jeong, Hye-Rin
Advisor : Prof. Kim, Jong-Goo, Ph.D.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Recently, the level of school violence has reached such a serious level as not only to bringing about physical and psychological pain but even as to causing suicidal thoughts. In the past, school violence usually occurred by a single offender. But types of violence have been diversified. Also the age of offender is becoming younger, violence becomes more brutal. As such, school violence has resurfaced as huge social problems. Despite many programs such as the initiatives for education in order to prevent school violence instituted by the Department of Justice and, the harms engendered by school violence is increasing rather than reducing.

Most students spend a lot of time in school, so the largest problem of school violence is that the problem greatly affects the psychology, behavior,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students including not only those who suffer directly but also those who suffer indirectly by witnessing school violence.

Most incidents of school violence are dealt with by school authorities in the form of punishing the perpetrating students. When retaliatory

dCollection @ chosun

violence occurs, therefore, more serious damage can be wrought upon the victim. Therefore, new measures such as restorative justice centering on both the perpetrators as well as the victims are needed. In this regard, diversion appears an effective tool in terms of avoiding the potential stigma that may be brought on to the perpetrators. To be specific, police diversion which takes place in the early stages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appears most effective compared with other diversions.

However, in the case of Korea, there is no clear legislative basis about police diversion. So several problems may arise. Even though this police diversion which has no legal basis is recognized in practice, accepting it in a restrictive fashion can be considered as the norm. For example, limiting its application to cases involving minor juvenile delinquency seems appropriate,while the conventional criminal justice process deals with more serious delinquency and crimes.

Especially, juvenile delinquents who are freed after admonition needs effective education programs to prevent recidivism. To do this, at least solving the problems about activation and substantiality of prevention measures for the juvenile delinquent is needed. Then, this thesis discusses the expansion and creation of police permissions. To do this, the requirements of police diversion and legislative action which can make sure the target are needed. About the legal basis, in case of the police diversion which can be recognized in business, even though it can be recognized by the principle of legality it has the limits so, legislative action should be forced. For this legislative action, reactive and proactive control is required to prevent arbitrary abuse of police diversion, Increasing the effect of police diversion by

dCollection @ chosun

enabling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in each steps and removing the problems can release the concerns and distrust of police diversion. Also, it can create an environmental foundation for the legislation of police diversion.

The investigative agencies should not only investigate the crime, find and punish the criminals but also consider that they protect the public safety as social security agencies to prevent school violence.

Ultimately, protecting human rights of the student by all school violence, and activation of diversion by investigation agency can protect and treat school violence effectively and can make an amicable agreement between perpetrator and victim. Due to these things, it needs to use and encourage aggressively. Especially, at the criminal justice case by school violence, pay attention to diversion rather than stick to existing traditional criminal justice process, must have the attitude for the activation of division with the change in understanding that the reformation and edification for the perpetrators of school violence is not only the role of only correctional facility but also entrusted to all criminal justice agencies. The common goal of all criminal justice agencies such as police, prosecutors, and correctional institutions is reduce the school violence, protect the rights of the offender and victim by school violence and pursuing legal definitions. And when they try to share the activation plan of diversion by investigation agency, all mission of criminal justice agency will be accomplished effectively.

dCollection @ chosun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최근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폭력이나, 정신적 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살충동을 야기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과거 학교폭력의 경우는 대체로 단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폭력의 유형이 다양해졌으며, 가해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지면서 잔인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각종 예방대책마련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피해는 감소되기보다 오히려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증가하는 학교폭력의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므로 직접피해를 당하는 학생들 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며 공포를 느끼는 간접피해를 당하는 학생들의 심리, 행동, 정서발달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학교폭력은 대부분 가해학생을 중심으로 처벌적 대응에 이르고 있으며, 보복적 행위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진다. 이에 기존의 처벌적 대응보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중심이 되는 회복적 정의와 같은 새로운 대응책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앞서 학교폭력에 대한 외국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실태와 대처방안의 현황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은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dCollection @ chosun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학교폭력의 상황을 살펴보면 양적으로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질적으로는 잔혹하고 흉포해지면서 폭력성은 대담함을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보고 폭력실태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여 경찰다이버전을 통한 해결방안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각 장은 다음과 같이 연구내용이 구성되었다.

제1장은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통하여 연구를 수행하게 된 목적을 설명하고 그 범위를 설정하였다.

제2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일반론을 통하여 학교폭력의 개념을 정의하고 학교폭력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 학교폭력의 원인과 유형 및 폭력 가해자의 유형화를 분석하고 기존 폭력 대책에 대한 법률분석을 하였다.

제3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다이버전에 대하여 그 개념을 정리하고 경찰다이버전의 필요성과 한계에 대하여 정리하였으며, 외국에서의 경찰다이버전의 운영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운영 실태와 비교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찰다이버전의 법률적 근거와 요건, 실무상 인정되는 범위를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학교폭력의 현 실태와 운영상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경찰다이버전에 대하여 개선해야할 방향을 제안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전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으며, 학교폭력의 문제점을 위해 경찰청의 범죄백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경찰의 학교폭력 대처방안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문제점을 찾아내고자 한다.

dCollection @ chosun

여러 학위논문 등 주로 문헌연구 방법을 통하여 학교폭력 및 경찰다이버전에 대하여 일반론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단행본, 정기간행물 등을 참조하여 각국 별로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다이버전의 시행 및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 있어서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방지대책의 운용현황에 관련하여서는 정부의 각종 문서 및 기관에서 발간한 각종 통계자료를 참고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dCollection @ chosun

제2장 학교 폭력의 일반론

제1절 학교폭력의 개념과 특징

1.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절한 학교폭력의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은 학교라는 정형적인 범위 안에서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폭력으로, 두 가지 용어로 구성되어 있다. 즉 '학교' 와 '폭력'이라는 용어의 결합이다. 여기서 '학교'의 의미내용은 학교주변을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이내에 위치한 지리적·공간적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다. 물론 일정한 거리가 어느 정도의 근접성을 의미 하느냐를 놓고 이론의 여지가 있음은 물론이다. 반면에 '폭력'의 의미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상해나 피해를 입히기 위해 사용되는 물리력을 지칭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한 힘과 권력의 부당한 사용도 폭력의 의미내용에 포섭될 수 있다. 이처럼 폭력의 외연은 단순한 물리력의 행사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포함해 보다 광범위한 유형의 피해로 확대 될 수 있다.[1)]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의 개념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의미하지만 연구자에 따라 학교폭력의 발생장소, 가해와 피해의 대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상이하다. 학교폭력을 둘러싼 시각의 차이는 폭력의 발생비율 피해와 가해의 원인등과 같은 연구결과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나게 하는 중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2)] 견해의 차이를 보이는 학교폭력 개념의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폭력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1) 박상도, "청소년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7면.
2) 임영식,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5권 제3호」, 한국청소년학회, 1998, 1-3면.

dCollection @ chosun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도 그것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학교폭력으로 보아야 한다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학교폭력이 청소년 폭력 이라는 용어와 혼용되어지기도 한다. 한편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학교 주변과 등·하교 길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한정시키기도 한다.[3] 둘째 학교폭력의 주체가 되는 가해자와 피해자이다. 우리나라보다 학교폭력 문제가 더욱 심각한 미국의 경우에는 학생들 사이의 폭력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에 대한 학생의 폭력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4]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빈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지만, 최근에 들어서면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폭력을 학교폭력의 유형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셋째 폭력의 개념정의를 놓고 명확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폭력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폭력은 "타인 또는 타인의 재산에 해를 입히기 위한 물리적인 힘의 행사" [5]라고 정의되어지지만,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상대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진 어떠한 행동도 폭력으로 간주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정의도 특정행위, 예컨대 따돌림이나 욕설과 같은 심리적·언어적인 폭력행위를 폭력으로 분류 할 것인가를 놓고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하고 있다.[6]

---

3) Aster, R. A. Behre, W. J. Fravill, K. & J. M. Wallace, "Perceptions of school violence as a problem and reports of violent events, 1997; A national survey of school social workers", Social Work, 42(1), pp. 55-68.
4) Michael. F. Leslie, B. Scott, P. Jessica, M. & Sharon, B., Factors associated with school psychologists percoptions of campus violence, Psychology in IN Schools, 33(1), 1996, pp. 28-37.
5) Archer, J. & Browne, Human Aggression: Naturalistic Approaches, Routledge, 1989, pp. 10-11.
6) 김창군·임계령,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법학연구 제38권」, 한국법학회, 2010, 175-176면.

dCollection @ chosun

2.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동 조항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한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내외에서의 폭력이다. 장소적 적용범위를 학교내외라고 정의한 점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내외라는 용어를 삽입한 입법 의도는 동법의 제명이 '학교' 폭력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외에서의 폭력행위도 동법의 적용대상임을 주의적이고 선언적으로 표현하고자 함에 있을 것이다. 반면 동법의 전신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폭력중재위원회법안에는 장소적 적용범위를 지칭하는 용어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둘째,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다. 제정 법안은 '학생 간'에 발생한 폭력이라고 하였으나, 기존의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등에 의한 학교폭력도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이를 확대하였다.[7]

이에 따라 관련자 중 일방이 학교 밖의 일반 청소년인 경우 동법이 적용되지 않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한 폭력이다. 이 중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는 전형적인 형법상의 범

7) 과학기술위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2. 2, 3면.

dCollection @ chosun

죄행위 이다. 그 외 강제적인 심부름 역시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한다는 점에서 강요죄에 해당하고, 성폭력 역시 성폭력특별법상의 범죄행위이다.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종류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 제정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 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라고 함으로써 성폭행 또는 성폭력을 제외하였다. 그 이후에도 입법정책론적인 관점에서 성폭력을 학교폭력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다고 보는 견해[8]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9] 및 실질적인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견해[10] 등이 대립되었다. 그러나 2008년 3월 동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던 것을 동 법상 정의규정에 모두 포섭하면서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일종으로 추가하게 되었다. 해석론 상으로는 성폭력의 범주가 지나치게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 및 그 행위의 정도나 태양의 다양성이 문제될 수도 있지만,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을 이유는 없다. 다만, 이와 동시에 전부개정법 제5조 제2항에 "제2조 제1호 중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하여는 동법의 적용을 되도록 피하고자 하였다. 이는 성폭력범

---

8) 박병식, "학교폭력대책의 올바른 방향과 법률적 과제",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 국회좋은교육연구회 공동주최, 학교폭력대책의 올바른 방향과 법률적 과제, 2005. 1. 11, 16면; 이진국, 앞의 논문, 114면.

9) 이주호, "성비행을 통해 본 학교폭력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 국회좋은교육연구회 공동주최, 학교폭력대책의 올바른 방향과 법률적과제, 2005. 1. 11, 22면.

10) 교육인적자원부, 2005 학교폭력 유형별 대처사례집, 2005, 38면 이하는 성폭력의 가·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성폭력특별법에 의하여 규정되며, 성폭력사건의 조사 및 처리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 할 뿐만 아니라 동법 제22조의5 규정상 학교장 및 교사는 성폭력사실을 안 때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폭력사건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든다.

dCollection @ chosun

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려하여 포함시키되 절차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동법에 의한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완충적인 입법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형법 또는 형사특별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의를 내리지 않으면서, 동법 제2조는 행위 중 따돌림과 사이버따돌림에 대한 정의 규정만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따돌림이란 두 사람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을 소외시켜 반복적으로 인격적인 무시 또는 음해하는 언어적·신체적 일체의 행위를 지칭한다. 그리고 2012년 개정법은 사이버따돌림을 추가하면서,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따돌림행위나 특정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도 학교폭력의 범주내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따돌림이란 각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이버따돌림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및 제74조 제1항 제3호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11]

3. 학교폭력예방법의 규범적 성격

학교폭력대책법의 규범적 성격은 무엇인가? 학교폭력대책법은 형사법적 규범인가 아니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행정법적 규범인가? 학교폭력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유형들은 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흡사하여 형사법규범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많다. 만약

11) 김혜경,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접근의 제한",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267-268면.

dCollection @ chosun

학교폭력대책법을 형사법규범으로 본다면 형법·형사소송법·소년법과 같은 일반법이 배제되고 학교폭력대책법이 우선 적용 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대책법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학교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은 명백히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중대한 학교폭력사건을 선도 및 보호의 명목으로 징계조치 등으로 종결하여 형사법을 의도적으로 배제할 가능성도 있다.[12] 따라서 동 법률의 성격을 밝히는 것은 동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정법률의 성격은 입법의 목적과 연혁, 법률의 내용 그리고 법률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법인 경우에는 기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기본 법률이 존재하는 지의 여부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학교폭력대책법이 형사법인지 행정징계법인지의 여부, 이어서 기본법인가 특별법인가가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형사법적 규범인 경우에는 법률의 주요내용이 범죄와 그에 대한 형사제재의 유형과 내용이 규정되어야 한다. 예컨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은 성폭력범죄의 정의 및 그에 대한 형사제재의 내용을 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법적 규범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여 검사징계법과[13]같은 행정목적의 징계법은 그 주요내용이 형벌이 아닌 일정한 징계의 유형과 절차를 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정한 행정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달성을 위한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제재와 형사제재를 부과하는 법률이 있다. 이러한

12) 정한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경희법학 제44권1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81면.

13) 검사징계법 제2조 (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조 (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임(解任), 면직(免職), 정직(停職), 감봉(減俸) 및 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는 것을 말한다. ⑤ 견책은 검사로 하여금 직무에 종사하면서 그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dCollection @ chosun

법률은 일반적으로 행정형법이라고 하며 이는 형사법규범과 행정법의 사이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저작권법, 하천법[14] 등의 많은 법률이 이에 해당한다. 학교폭력대책법은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의 예방과 사후적 조치를 위한 기구의 설치,[15] 일정한 의무의 규정[16]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법률의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 동 법률의 규정과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대책법의 제 규정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관련 규정
목적	제1조
정의	제2조
의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 · 상담 등),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제15조(학교폭력예방교육 등)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기구 설치 및 기능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 · 기능),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 운영),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 · 기능),

14) 하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유수(流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3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일으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 학교폭력지역대책위원회(제9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제10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제12조), 상담전담기구(제14조) 등

16) 교육감의 임무(제11조), 전문상담교사 배치(제14조), 학교폭력예방교육(제15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제17조) 등

dCollection @ chosun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 · 운영),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18조(분쟁조정)
불복관련 규정	제17조의2(재심청구)
벌칙	제22조(벌칙) 1항 : 형벌(벌금형)/ 2항 : 과태료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동 법률은 주로 의무와 기구 그리고 기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조는 '이 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을 목적으로 함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법의 목적은 ①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②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③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에 있다. 궁극적으로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게 한다는 교육 이념을 구체화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만, 학교폭력을 행한 경우에 가해자에 대해서 일정한 형사적 제재가 아니라 일정한 조치가[17]가해질 뿐이다.[18] 따라서 학교폭력대책법은 형사법적 규범은 아니며,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행정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일

17)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18) 다만 학교폭력대책법 제21조의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규정되어 있다.

dCollection @ chosun

정한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징계법적 규범이라고 보아야 한다.[19] 따라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고, 이어서 가해학생의 행위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사 절차를 개시될 것이다.[20][21] 학교폭력대책법에서는 '학교폭력의 규제,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률을 적용한다. 그러나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및 2항)'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법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제한적 의미의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22]

4. 최근 학교폭력의 특징

청소년기는 매우 심한 감정변화로 자신의 이성을 통제하기 어려운 시기이다. 이 시기를 잘 극복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실패와 좌절의 악순환을 가져오고,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반사회적 폭력행동에 의존하기도 한다. 과거의 학교폭력은 소수의 문제학생에 의해 주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다수의 학생들에 의해 반복적

---

19) 정한중, 앞의 논문, 78면.

20) 물론 이 경우에 자치위원회에 소속된 검사, 경찰 등이 관할권이 있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가 수반될 수 있다. 그리고 이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한 이중처벌의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징계법 이므로 이중처벌이 아님은 명백하지만 가해학생과 보호자들은 당연히 이중처벌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 즉 학교가 앞장서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이나 다름없는 경우로 받아들일 것이다(정한중, 위의 논문, 78면).

21) 이는 형법의 보충성의 관점에서 볼 때 당연하다.

22) 한편 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동 법률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와 특별법관계에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는 학교폭력대책법 제17조는 초·중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외에도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학급교체, 전학, 심리치료, 출석정지 등이 추가적인 제재조치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기초로 한다(박윤기,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82면 참조).

dCollection @ chosun

으로 이루어지고, 물리적인 신체 폭력에 한정되지 않고 정서적 폭력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변질되고 있는데, 최근 학교폭력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23]

첫째, 학교폭력의 최초 발생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통계에 따르면, 피해학생 중53.6%가 초등학교 때 최초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고, 가해학생 중 58.0%가 초등학교 때 최초로 학교폭력을 가해했다고 한다. 과거 중·고등학교 때 주로 발생했던 학교폭력은 이렇듯 초등학교 때부터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중학생들의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총 심의건수 중 중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69% 수준이다. 2010년 심의건수 총 7,823건 중 초등학교가 231건(3%), 중학교가 5,376(69%), 고등학교가 2,216건(28%)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 된 학교폭력 관련 민원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중학교의 증가율이 초등학교의 7배, 고등학교의 2배 수준이다.[24]

셋째,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의 악순환 현상이다. 최근 학교폭력은 집단으로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 중 일부는 이미 피해자로서 폭력을 당한 학생들도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별이 불분명하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이 다시 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 다른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와 같이 학교폭력은 피해와 가해의 악순환이 반복된다.

넷째, 언어적·정서적 폭력의 증가와 폭력의 지속성이다. 단순한 신체적 폭력이 아닌 강제적 심부름(46%), 사이버폭력(34.9%), 성적 모독(20.7%) 등 언어적·정신적 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언어적·정신적 폭력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SNS 등을 통해 손쉽게 반복적으로 이

23) 법무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2012, 1-2면.
24)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학교폭력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11년도의 2010년 대비 증가율은 초등학교5.1%, 중학교 35.6%, 고등학교 19.6%로 나타났다.

dCollection @ chosun

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또한 가해자가 주위에 알린 피해자에게 보복 폭행을 하거나(44.0%), 처음 피해를 가한 학생이 친한 주위 학생과 함께(33.4%)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교폭력 가해자 중 2회 이상의 경험이 있는 학생의 비율이 무려 61.1%나 된다.

다섯째, 학교폭력의 집단화 경향이 뚜렷하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중 66.2%가 2명 이상의 가해자에게 폭력을 당하고, 가해학생의 수가 '6명 이상' 인 경우가 16.3%나 되는 등 학교폭력의 집단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일진 등 조직에 가입하거나, 학교별 일진이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과 대응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가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사소한 장난으로 인식하거나 학교폭력을 목격하는 제3자들은 방관하는 경향이 많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온정주의적 시각으로 인해 처벌보다는 교육적 차원의 계도 조치에 치우쳐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반감시키고 있다. 학부모는 아이들은 싸우면서 자라는 것이 당연하다며 학교폭력의 원인을 피해 학생으로 돌리려는 경향도 있으며, 교사는 학교의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하고 신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학교폭력을 은폐, 축소하려는 경향이 강하다.[25]

25) 조종태,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방안-법무부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34-3호」, 한국법학원, 2013, 146-147면.

dCollection @ chosun

제2절 학교폭력의 원인과 유형

1. 학교폭력의 발생원인

학교폭력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드물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의 정도나 양상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기도 하여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쉽지는 않다.[26] 청소년 비행과 학교폭력에 관한 그간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어려 입장을 종합하면 그 원인들은 학교 내의 요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 폭력이 학교폭력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너무나 방대하다. 일반적으로 非行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은 한 가지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여러 문제 행동들을 동시에 보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청소년 비행 유발 요인들이 학교폭력에도 관련되어질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27] 따라서 기존의 청소년 비행과 학교폭력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지시한 여러 입장을 종합하여보면 학교폭력은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및 지역사회요인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가. 개인관련 요인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인 위험요인으로 우선 생물학적 원인이 있다.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은 전두엽 실행기능에 문제를 가지고 있어 공격적이고 부절적한 언어적·신체적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과 유사한 비행행동을 보이는

---

26) 조종태, 앞의 논문, 143면.
27) Donovan, J. & Jessor, R. Structure of problem in adolesscence and young adulthoo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u, 53, 1985, pp. 890-904.

dCollection @ chosun

청소년들 역시 실행과 낮은 주의력을 유발하여 결국 폭력적인 행동과 연결될 수 있다.[28]

학교폭력 행동을 하는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개인적 특성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충동성과 공격성이다. 충동적이고 공격성이 높은 사람은 사회질서나 규범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 들은 스스로 분노를 조절하거나 화를 참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한 해석과 인식에 있어서 일반 청소년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29]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개인의 장애 특히 품행장애 반항성장애 주의결핍 및 과잉 행동장애 등도 폭력이나 비행과 관련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특수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그들은 학교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가 될 위험성이 높다.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잘 기능하지 못하고 폭력에서 자신을 보호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은 학교폭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반면에 과거의 생활경험이나 생활양식 특성 그들 자신이 갖고 있는 행동장애를 공격적인 방법으로 표출하여 학교폭력의 가해 청소년이 되기도 한다.

나. 가정에서의 요인

가정은 개인의 성격과 행동유형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많은 연구는 부적절한 가정환경이 학교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인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가정은 부모와 자녀를 구성원으로 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여 살아가는 혈연공동체이다. 따라서 가정은 인격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단위로서 구성원 상호간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행동 지침을 교육하고 정서를 안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청소년의 인격형성

28) 문용린외 공저,「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학지사, 2006, 53면.
29) 노성호, “학교폭력의 실태와 문제점”,「범죄방지포럼 제5호」, 한국범죄방지재단, 2004.

dCollection @ chosun

은 가정으로부터 결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갈등이나 이별로 인한 결손가정,[30] 가족구성원간의갈등, 가정의 경제적인빈곤, 부모의 범죄 성향 등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청소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다. 학교에서의 요인

우리학생들은 진학과 학업문제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데 우선권을 두고 있는 실정이므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개인적인 취향에 맞춰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왜곡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31] 또한, 학교 교육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기능적 요소들도 학교폭력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로는 과밀한 학급 또는 학생 수, 폭력회피 능력의 제한, 분노, 거부, 불만 등을 야기 시킬 수 있는 행동의 제약과 순응의 요구, 폭력 행위를 유발하기 쉬운 건물 구조 등을 들 수 있다. 게다가 교사의 무관심 학교의 미온적인 대응, 학교에 대한 지역사회의 무관심, 통솔력과 지도력의 부재 등도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32]

라. 지역사회에서의 요인

---

30) 결손가정이라는 말은 부모의 부존재가 곧 그자녀의 결손으로 이어지는 듯 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말하자면 중립성이 없는 개념이다. 같은 내용의 말로 소년·소년 가장이라는 것이 있는데, 결손 가정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는 없다. 오히려 사회·국가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매우 따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손 가정이라는 말 대신 편부가정 편모가정 또는 부모가 없는 가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31) 곽영길,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48면.

32) 이상균,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4면.

dCollection @ chosun

도시화·산업화는 청소년 폭력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도 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상대적 빈곤과 계층 차에서 오는 부모권위의 약화, 빈곤 교육에서의 소외, 의료혜택 부족, 직업 및 생활수준의 심한 격차에서 오는 심리적인 열등감, 다른 계층으로의 전환 시도의 실패에서 오는 좌절과 포기 등의 문제를 파생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지역사회의 원인으로는 먼저 학교주변에서 성행하고 있는 유해환경을 들 수 있는데, 예컨대 불량주택지, 빈민가, 오락실, 유흥업소, 노래방, 게임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퇴폐유해환경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유흥비에 대한 욕구를 만들어냄으로써 다른 청소년들에 대한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금품을 갈취하는 행동을 선택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성인들이 청소년 비행을 방관·묵인하는 사회풍토, 즉 성인들의 청소년 비행에 대한 무관심을 갖고 있는 현상도 학교폭력 발행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33]

2.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은 폭력행위이다. 그러나 이는 형법에서 흔히 유형력 또는 물리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폭행과 다르다. 또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의 한 요건인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서 말하는 '폭력'과도 다른데, 이는 상대방의 의사를 강제하는 폭력, 곧 강제적 폭력으로서 심리적 또는 윤리적 폭력을 의미하고, 절대적 폭력은 제외된다. 또한 줄여서 폭처법으로 불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폭력행위와도 다르다.

학교폭력대책법은 앞서 보았듯이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A)를 수반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

33) 김창군·임계령, 앞의 논문, 182면.

dCollection @ chosun

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행위’(B)로 보고 있다. B에는 당연히 A가 따르므로 결국 폭력행위는 B이고, 이를 A의 표현을 제2장 경찰훈방의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 개념의 정립 사용하여 유형화하면 폭력은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재산적 폭력 3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 2008년도 학교폭력 예방 가이드북이 학교폭력을 신체적 폭력 및 금품갈취, 정신적 폭력, 집단적 따돌림(이른바 ‘왕따’), 사이버 상에서의 폭력 4가지로 파악한 것은 비체계적이다. 앞의 두 폭력은 피해유형이고, 뒤의 두 폭력은 행위유형이기 때문이다. 폭력행위로 인해 신체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도 받고, 재산적 피해는 정신적 피해도 동반하므로, 이처럼 구별한 폭력 개념에 B를 적절히 분산하여 배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이런 작업은 학교폭력 개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폭력행위로 인한 주된 피해를 중심으로 이를 시도하면, 일단 폭행, 상해, 감금, 약취·유인, 성폭력은 신체적 폭력의 하위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공갈은 재산적 폭력에 해당한다.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은 정신적 폭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본다. 강제적인 심부름은 강요의 한 형태이고, 강요는 신체적 폭력 보다는 정신적 폭력에 가깝다고 본다. 협박도 형법은 이를 폭행과 함께 규정하고 있지만 주된 피해는 정신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신적 폭력으로 분류한다.[34]

현행 학교폭력대책법의 학교폭력은 간단히 말하면 ‘학생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폭력’인데, 학교폭력대책법은 이를 다시 ‘폭행, 상해, 감금, 약취·유인, 성폭력, 공갈, 협박,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이라고 구체화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가정폭력특례법은 이런 분석의 형태로 가정폭력범죄를 정의하고 있다. 가정폭력특례법 제2조는 제1호에

34) 윤동호·김은경,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법제화 방안-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법적 근거와 절차마련 방안”, 「연구총서 Vol.2012 No.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42-43면.

dCollection @ chosun

서 먼저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어 제3호에서 “가정폭력범죄”를 ‘가정폭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죄’라고 한 뒤 형법전의 개인적 법익에 관한 아래의 범죄들을 열거하고 있다.[35]

① 「형법」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 중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② 「형법」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③ 「형법」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④ 「형법」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⑤ 「형법」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35) 윤동호·김은경, 앞의 논문, 44면.

dCollection @ chosun

⑥ 「형법」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⑦ 「형법」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⑧ 「형법」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⑨ 「형법」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⑩ 「형법」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⑪ ①목부터 ⑩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dCollection @ chosun

제3절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실태 통계분석

1. 우리나라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통계 분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실시한 20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36] 결과와 11월 학교폭력 공시정보 분석 결과를 2013년 11월 29일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약 454만 명의 학생과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37]되었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개요 >

○ (대상) 초 4학년 ~ 고 2학년 학생(약 454만 명) 및 초·중·고 학부모

- 학생 : 406만 명 참여(조사참여율 89.4%)
- 학부모 : 898천명 참여

○ (기간 및 방법) '13. 9. 9 ~ 10. 18, 온라인 조사

※ '13년 1학기부터 조사 시점까지 피해, 가해, 목격 경험 및 인식 조사

○ (내용) 피해·가해·목격 경험 및 인식, 학교폭력 예방 교육 효과 등 (총 22문항)

※ 학부모 조사 시범실시(학교폭력 현황 및 예방·대책에 대한 인식 전반)

○ (주관) 한국교육개발원(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위탁)

가.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지속적 감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77천명이며, 피해응답률은 1.9%로, '13년 1차 2.2% 대비 0.3%p 감소하였다.[38]

36) 2차 실태조사에서는 고3 학생 미참여
37) 교육부 보도자료, 2013년11월29일.
38) '12년 1차 172천명 ⇒ 2차 321천명 ⇒ 13년 1차 94천명 ⇒ 2차 77천명(고3 미참여)

dCollection @ chosun

<도표-1>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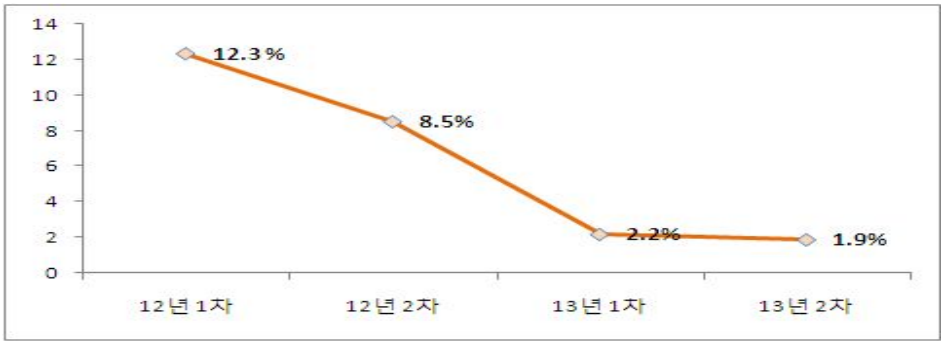

동일한 조사방법(온라인 조사) 및 대상(고3 제외)을 기준으로 시계열 비교할 경우, 피해응답률 감소폭은 더욱 커졌다. 이와 같은 학교폭력 피해 감소 추세는 학교현장에서 예방교육 강화 등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3 제외)' 12년 2차 313천명(9.1%) ⇒ ' 13년1차 91천명(2.5%) ⇒ ' 13년2차 77천명(1.9%)

◈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증가

(' 13년 11월 공시정보 분석)

- '13년 1학기 학교별 학급당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은 203분으로 ' 12년 2학기 149분 대비 54분 증가(36.4%)
- 또래상담, 자치법정 등 학생중심 예방 프로그램의 학교별 참여 학생 수도 '13년 1학기 103.8명으로 ' 12년 2학기 76.6명 대비 27.2명이 증가(3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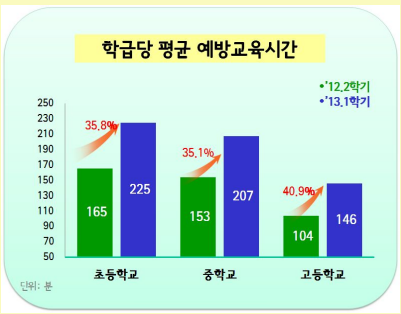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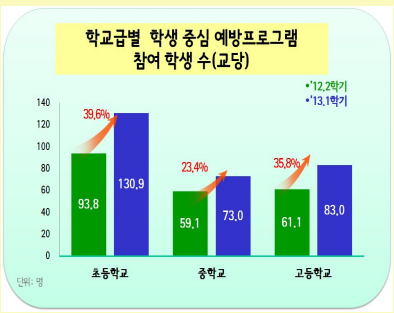

dCollection @ chosun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2.7%), 중학교(2.0%), 고등학교(0.9%)순으로, 여학생(1.6%)에 비해 남학생(2.2%)의 피해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표-2〉 피해 응답률(학교급·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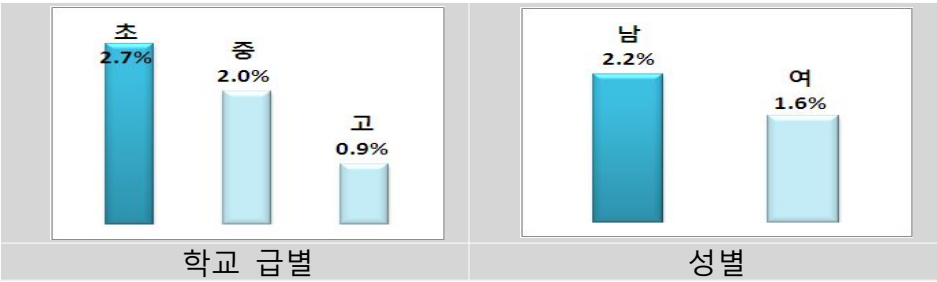

나.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의 유형별 비중

피해 유형 응답건수(중복응답)는 161천 건으로 언어폭력 > 집단따돌림 > 폭행・감금 > 사이버 괴롭힘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갈취, 강제심부름 등 쉽게 드러나는 학교폭력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의 비중은 여전히 높게 나타나, 또래 문화 개선을 위한 학교 현장의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표-3〉 피해응답 건수 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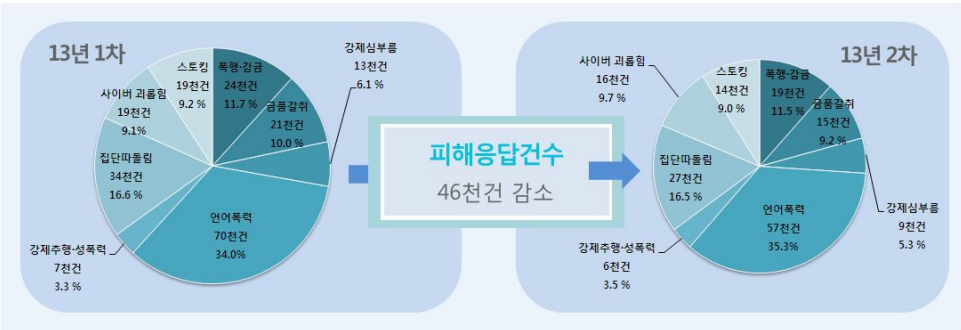

학교 급이 낮을수록 집단따돌림 비중이, 학교 급이 높을수록 강제심

dCollection @ chosun

부름, 폭행·감금의 비중이 높았으며, 중학생은 금품갈취, 사이버 괴롭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로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학교 일과시간 중(63.6%)에 교실 등 학교 안(71.6%)에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주로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를 당했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9]

여학생(16.4%)이 남학생(2.2%)에 비해 사이버 공간 피해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의 사이버 공간 피해 비율(9.9%)이 가장 높았다.[40] 피해 응답자 중 55천명의 학생(71.6%)이 '힘들었다'고 응답하였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힘들었다" 응답 비율이 높았다.[41]

집단따돌림(83.8%), 사이버 괴롭힘(82.3%), 스토킹(79.7%)의 경우, 피해학생의 정서적 고통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후 가장 많이 든 생각은 '학교 가기 싫었다'(피해응답자의 19.0%), '우울하고 슬펐다'(12.3%), '상대방을 괴롭히고 싶었다'(12.0%) 순으로 응답하였다.

<도표-3> 피해 후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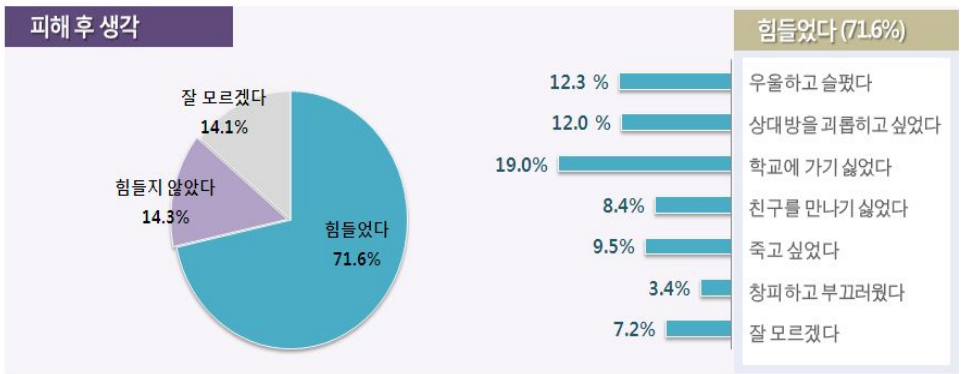

다. 피해 후 도움 요청

39) '12년 2차 5.7% → '13년 1차 7.2% → '13년 2차 7.9%
40) 사이버 공간 피해 : 중학생(9.9%) > 초등학생(6.6%) > 고등학생(6.5%)
41) '힘들었다' 응답 비율 : 여학생 81.4% > 남학생 65%

dCollection @ chosun

피해 사실을 가족·학교 등에 알렸다는 응답은 76.1% 이었으며, 알린 상대는 가족(31.4%) > 학교(23.7%) > 친구·선배(18.2%) 순이며, 학교・선생님께 알렸다는 응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2]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학생들은 주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25.3%),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19.1%), '스스로 해결하려고'(17.7%), '보복당할 것 같아서'(15.4%) 등의 이유로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43]

다른 학생을 학교폭력 등으로 괴롭힌 적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8천명이며, 가해응답률은 1.0%로, '13년 1차 조사 1.1% 대비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44]

<도표-4> 가해 응답률

동일한 대상(고3 제외) 기준 시계열 비교 시, 가해응답률 감소폭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3 제외) ' 12년2차 152천명(**4.4%**) ⇒ ' 13년1차 46천명(**1.3%**)
⇒ 13년2차 38천명(**1.0%**)

유형별로는 집단따돌림(28.8%) > 언어폭력(25.8%) > 사이버 괴롭힘(12.2%) > 폭행・감금(9.1%)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45]

---

42) 학교·선생님 신고 : '12년 2차 15.0%→'13년 1차 20.4%→'13년 2차 23.7%
43) 기타(9.0%),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8.9%), 어디에 알리는지 몰라서(4.5%)
44) '12년 2차 156천명 ⇒ '13년 1차 47천명 ⇒ '13년 2차 38천명(고3 미참여)
45) 가해 방법 : 여럿이 가해했다 64.2% vs. 혼자 가해했다 35.8%

dCollection @ chosun

가해학생의 24.4%(9천명)는 피해경험도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학생일수록 부모님의 관심, 가족과의 대화가 적고, 가족 간 갈등이 많으며, 학업흥미도가 낮게 나타났다. 다른 학생을 괴롭힌 주된 이유는 '장난으로'(29.7%) > '피해학생이 맘에 안 들어서'(23.9%) > '상대방이 먼저 괴롭혀서'(16.8%) > '특별한 이유 없다'(10.2%) > '화풀이·스트레스'(4.3%) 순으로 나타났다.[46]

<도표-5> 가해행위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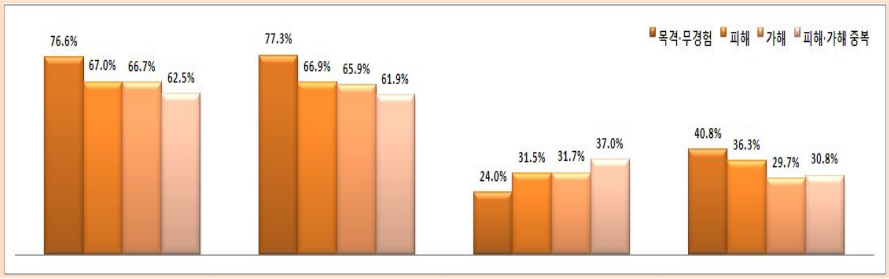

부모님의 관심	가족과의 대화	가족 간 갈등	학업흥미도

가해학생 중 93.2%(36천명)는 가해행동을 중단했다고 응답했고, 중단 이유는 '스스로 나쁜 행동임을 알게 되어서'(43.2%) > '학교의 처분이나 선생님한테 혼나서'(27.0%) > '피해학생이 싫어해서'(12.8%) > '예방교육'(8.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47] 이는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조치 등 학교현장의 단호한 대응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을 통한 학생들의 인식 변화가 실제로 학교폭력을 중단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라. 학교폭력을 모른 척 하는 방관자 비율

46) 기타 12.4%, 다른 학생이 시켜서 1.6%, 내 힘을 보여주려고 0.7%, 관심 받고 싶어서 0.3%
47) 피해학생을 만나지 않게 되어 3.5%, 같이 괴롭히던 친구와 멀어져서 2.8%, 경찰에 신고 2.3%

dCollection @ chosun

학교폭력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377천명, 목격 응답률은 9.4%로, '13년 1차 조사 7.6% 대비 1.8%p 증가하여, 학교폭력 발생 시 관심을 갖고 인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48] 학교폭력을 목격했을 때 '모른 척 했다' 응답은 23.9%로 1차 조사 대비 5.0%p 감소하여 꾸준히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에 대해 방관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

<도표-6> 학교폭력의 방관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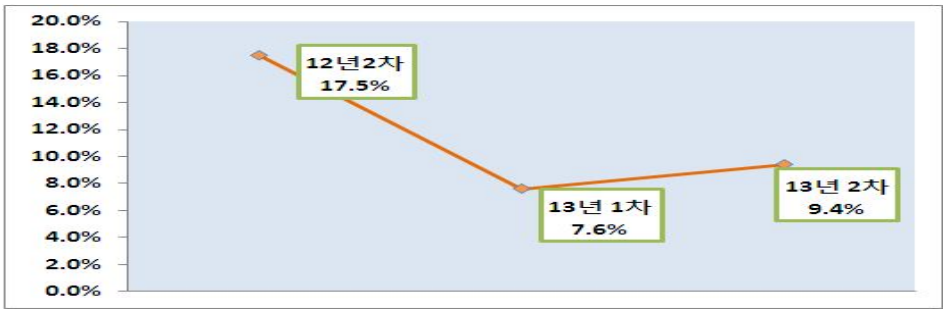

마. 학교폭력의 주된 원인

이번에 시범 실시한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인식조사 참여 학부모 898천 명 중 49.4%(443천명)가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9] 주로 TV, 신문 등(40.4%), 주위 사람(25.2%), 학부모연수 등 학교(16.9%), 자녀(16.6%) 등을 통해 학교폭력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50] 33.4%(300천명)의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51]

학부모들은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인터넷 등 대중매체(34.4%)의 영향

48) 설문문항 변경 : ('13년 1차) 다른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목격한 적 있나요? → ('13년 2차) 다른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보거나 들은 적 있나요?
49)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 그렇다(49.4%) > 보통이다(28.1%) > 그렇지 않다(22.5%)
50) 학부모 656천명(73.0%)이 자녀와 학교폭력 관련 대화 경험이 있다고 응답
51)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다 : 보통이다(42.2%) > 그렇다(33.4%) > 그렇지 않다(24.4%)

dCollection @ chosun

이 가장 큰 것으로 응답하였으며,[52]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선생님·학교(69.8%) > 117 학교폭력신고센터(13.9%) > 경찰서(9.3%) 순으로 알리겠다고 응답하였다.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서는 인성 및 체육/예술교육(14.1%) > CCTV 확대(12.8%) > 건전한 또래 문화 조성(12.7%) 순으로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도표-7> 학교폭력의 원인 (부모들의 입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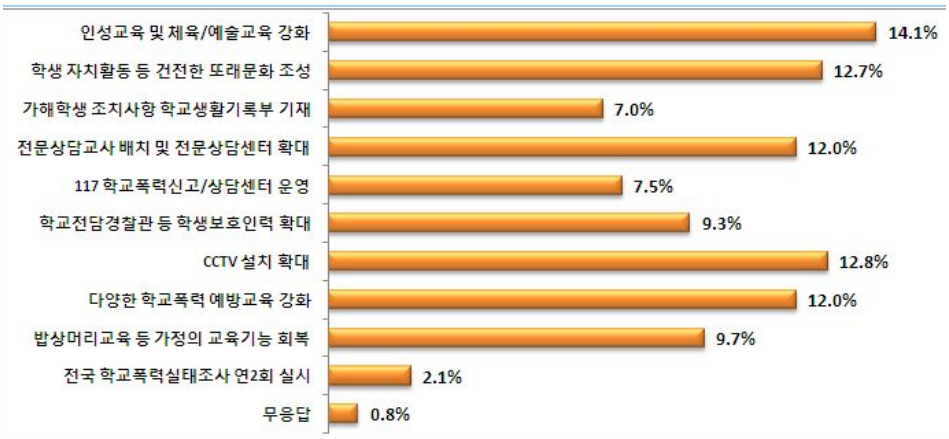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책 중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바.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를 통해 공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13년 1학기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횟수는 '12년 1학기 2.9회에서 '13년 1학기 2.3회로 감소하였으며, 심의건수도 '12년 1학기 1.4건에서 '13년 1학기 0.8건으로 감소하였다.[53]

52) 인터넷 등 대중매체 영향(34.4%) > 경쟁적 학교문화, 학업스트레스(17.0%) > 가정환경(13.7%) > 나쁜 친구(12.9%) > 사회적 분위기(12.3%) > 가해학생 인성이 나빠서(9.7%)

53) '12년 2학기와 비교할 경우, 개최횟수와 심의 건수는 각각 4.5%, 14.3% 증가했으며, 이는 학년이 바뀌는 3~4월에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피해학생들의 학교 신고 비

dCollection @ chosun

<도표-8> 학폭위의 횟수 및 심의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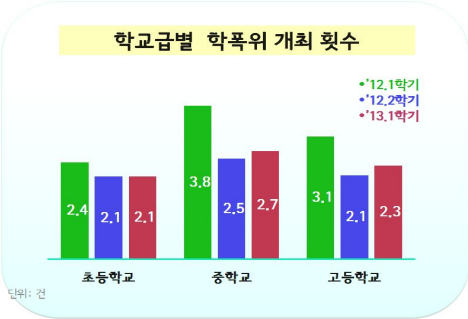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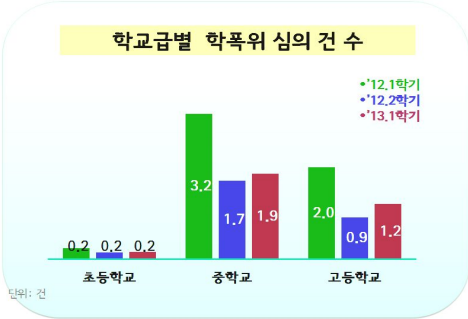

’13년 1학기 폭력 유형별 전체 심의 현황은 폭행(5,986건, 53.6%), 공갈(760건, 6.8%), 협박(643건, 5.8%), 명예훼손·모욕(602건, 5.4%), 정보통신망상의 음란·폭력·사이버 따돌림(598건, 5.4%) 순으로 많았으며, 사이버 폭력의 심의 비중은 ‘12년 1학기 2.8%(530건), ’12년 2학기 3.7%(363건), ‘13년 1학기 5.4%(598건)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피해학생 보호조치 건수는 ‘12년 1학기 2.0건에서 ’13년 1학기 1.1건으로 45% 감소하였으며,[54]보호조치 유형별로는 심리상담 및 조언(11,007건, 82.9%), 일시보호(854건, 6.4%), 치료 및 요양(718건, 5.4%) 순으로 나타났다.(’13년 1학기 기준)

<도표-9> 피해학생 보호조치 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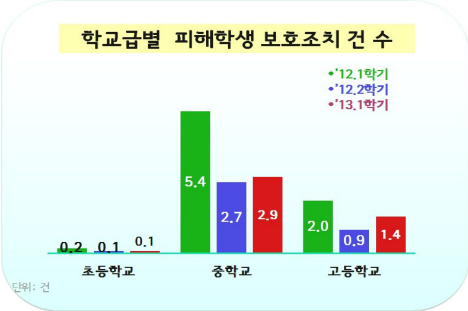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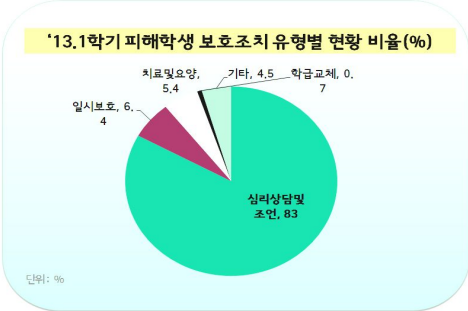

중이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54) '12년 2학기 피해학생 보호조치 1.0건 대비 10% 증가

dCollection @ chosun

학교별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건수는 '12년 1학기 3.4건에서 ' 13년 1학기 2.2건으로 35% 감소하였으며,[55] 선도 조치 유형별로는 서면사과(6,893건, 27.0%), 학교봉사(5,021건, 19.7%), 특별교육·심리치료(4,414건, 17.3%)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13년 1학기 기준)

<도표-10> 가해학생 선도 및 교육조치 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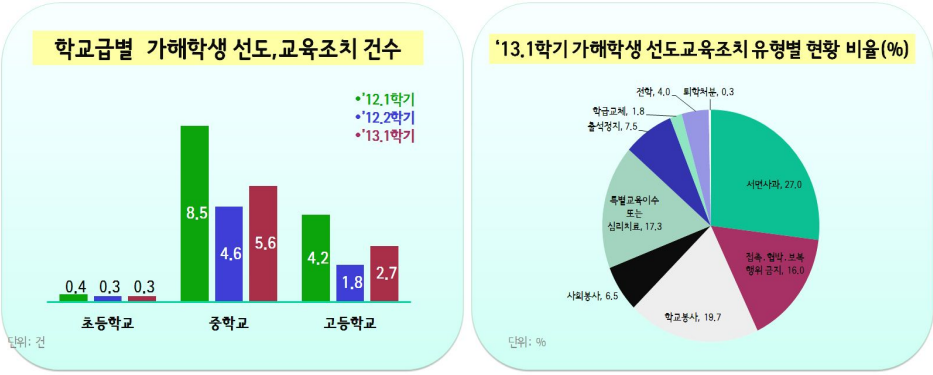

사.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1) 교육청·단위학교별 맞춤형 대책 마련

2013년 10월 21일 각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 시달된 '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지역 단위의 실태조사 분석 결과와 지역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별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 하였고, 단위학교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내·외 순찰 및 안전대책, 신고체계 점검·개선, 예방교육 활용 등 「학교폭력 사안별 처리방안 및 예방대책」을 수립·시행 중에 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가 눈에 띄게 줄어든 학교들에 대한 학교 현장의 노력을 살

55) '12년 2학기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1.7건 대비 29% 증가

dCollection @ chosun

펴본 결과, 학생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 또래간의 공감・협력・배려하는 활동, 교사-학생 간의 관계 증진,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등을 통해 학교공동체로서의 문화조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지역사회 등 현장의 자율적인 예방활동 적극지원

교육부는 2013년 7월 23일 발표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을 관계부처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다음의 사항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형별 비중이 지속 증가[56]하고 있는 사이버폭력과, 높은 비중[57]을 차지하는 언어폭력, 집단따돌림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강화하여, 사이버폭력에 대한 교원 및 학부모의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및 교육을 강화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 캠페인’ 등을 지속 추진하며,[58][59] 습관화・일상화되기 쉬운 욕설・비속어 등에 대해 지속적인 언어문화 개선을 유도하고,[60] ‘교우관계 회복기간제’ 모델 마련 및 시범 운영을 통해 집단따돌림에 대한 회복적 접근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심각한 학교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피해학생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 내실화 등 학교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교육 및 보호를 위한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조기에 구축 할 계획이다.[61] 아울러, 가정해체 등으로 인한 위기학생 등을 지원하는 가정형 Wee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

56) 사이버폭력 비중 : ('12. 2차) 7.3% → ('13. 1차) 9.1% → ('13. 2차) 9.7%
57) 유형별 피해응답 : 언어폭력(35.3%), 집단따돌림(16.5%), 폭행·감금(11.5%) 順
58) 사이버 기기의 건전한 사용·활용 습관 형성 지원
59) 예방교육 전문 강사 육성, ‘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 앱’ 서비스 확대('14.3.~) 등
60) 1) 언어습관 자가진단표, 교사용 훈화자료, 교육용 다큐영상자료 등 보급
2) 학교·학급단위 사랑·존중·격려의 대화운동 전개 지원
3) 욕설퇴치 아이디어 공모제, 교육용 TV 다큐 학습지도안 공모 등
61) (당초) '14년 모든 시·도 설치 → (조기구축) '13년 말 모든 시·도(26개 기관) 설치

dCollection @ chosun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Wee센터 야간상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단위학교, 지역사회 등 현장의 자율적 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해, 또래보호 등 학생또래 활동, 전 교직원의 교내·외 순찰, 학부모 자원봉사 등 단위학교의 자율적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학교폭력예방 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를 1,000교('13년)에서 3,000교('14년)로 확대하고, 연극·뮤지컬 등 문화 체험을 통한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우수지역 인증 등을 통해 지역 차원에서 경찰청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형성,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근절 활동 등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폭력의 해법은 현장에 있다는 원칙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여 학교 현장의 변화와 노력을 유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을 통해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2. 현행 학교폭력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가. 찬성론의 입장

(1) 임기응변식 대증요법을 탈피하려는 의지 표현

한겨레신문 사설은 "지금까지 임기응변식 대증요법과는 다른 내용과 의지가 담길 것으로 기대할 만했다. 정부도 처벌보다 예방, 규제보다 자율책임을 앞세워 이런 기대에 부응했다. 실제로 기존 대책과 제도의 한계로 소홀한 인성교육을 꼽았으며, 이는 성적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에서 비롯되었다고 정부는 밝혔다."고 평하고 있다.[62]

(2) 현실성을 높인 정책의 제시

62) 2012.2.6.자, 한겨레신문(http://www.hani.co.kr), 2014년 4월 21일 방문.

dCollection @ chosun

서울신문은 “이번 대책은 학교폭력에 대한 기존의 땜질식 대책을 다듬고 보완해 현실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즉시 출석 정지, 전학, 학부모 소환, 징계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단계적으로 제재하고, 대신 피해학생은 경찰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전학 가는 일이 없도록 했다.” 고 평했다.[63]

세계일보는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학생의 상담과 보호, 치료비를 부담한 뒤 가해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토록 한 것은 학부모들의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을 일깨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례도 학생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과 그 부모, 학교에 연대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고 논평했다.[64]

(3) 사후 대책보다 사전 예방에의 주목

서울신문은 “학교폭력은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 예방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고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점을 단계적으로 교육시키겠다는 교과부 방침은 올바른 방향으로 여겨진다.” 고 평했다.[65]

(4) 학교의 권한·책임 강화와 가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책임제고

동아일보는 “학교의 권한·책임 강화와 가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높인 점이 무엇보다 눈에 띈다. 학교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즉시 출석 정지권을 부여하되, 학교폭력을 은폐한학교장과 교원에 대해서는 금품수수와 성적조작 등 중대 비위 수준으로 징계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 교장과 교사들은 학교의 명예 훼손과 처벌을 두려워해 쉬쉬했던 것이 사실이다.” [66]라고 하면서 정부의 대책이

---

63) 2012.2.7.자, 31면 사설,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학교폭력), 2014년 4월 21일 방문

64) 2012.2.7.자, 세계일보 (http://www.segye.com/), 2014년 4월 21일 방문.

65) 2012.2.7.자, 31면 사설, 서울신문.

66) 2012.2.7, 동아일보(http://news.donga.com/), 2014년 4월 21일 방문.

dCollection @ chosun

학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 점을 평가하고 있다.

나. 반대론의 입장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 종합 대책에 관해서 일부 언론에서 이것에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예컨대, 한겨레의 "결국 처벌 강화뿐인 대책, 요원한 학교폭력 근절"[67], 경향신문의 "학교폭력 근절하려면 교육정책 전환부터"[68] 등이 그 예이다. 그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거론되고 있다.

전시행정의 성격과 입시위주 교육풍토를 불식하기 위한 근본대책의 부재 경향신문은 정부정책이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하면서 "정부는 학생 신고 등을 기초로 '일진경보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학생들은 "일진이 숨어서 때리지, 남들 보는 데서 때리느냐"며 시큰둥하다. "담임교사가 학생과 1대1 면담을 실시토록 한 부분도 교사 증원이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없이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규정했다.[69]

세계일보는 일진경보제는 일진회의 실체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시된다고 했다.[70] 문화일보도 일진경보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전국에 만연해 심각한 교육적·사회적 암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대책이 나왔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의 폭력조직 파악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일진지표'를 개발해 정기적으로 표본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보를 발령하겠다는 식은 전시행정에만 그칠 공산이 크다. 그보다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학교 생활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 등 법적 규범부터 재정비해야

67) 2012.2.7, 한겨레신문, 앞의 글.
68) 2012.2.7.자,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 2014년 4월 21일 방문.
69) 2012.2.7, 경향신문, 위의 글.
70) 2012.2.7, 세계일보, 앞의 글.

dCollection @ chosun

한다. 서울·경기·광주교육청 등의 학생인권조례가 직·간접 체벌과 함께 금지하고 있는 교육적 조치들을 조례는 물론 교칙을 통해서도 금지하지 못하도록 상위 규범에 못 박는 일이 절실하다.” 71)

경향신문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겠다면서 정작 문제의 ‘뿌리’에 대한 처방은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는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로 소통·감성 능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성적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으로 인성 교육에 소홀했다’고도 했다.” “학교폭력 대책에 왕도(王道)는 없으나 정도(正道)는 있다. 무한경쟁 풍토를 완화해 학교를 좀 더 ‘다닐 만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정부는 강압적 야간자율학습과 0교시 수업을 낳고 있는 일제고사(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부터 폐지해야 한다.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는 특수목적고·자율형사립고 정책과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대학입시 제도도 재검토하는 게 옳다.” 72)

(2) 예방보다 사후대책에의 치중

한겨레는 “가해자 처벌과 적발 및 신고 강화 등 사후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강제 전학을 실시하고, 입시 자료인 학생부에 가해 사실을 기록하도록 한 것 따위가 그것이다. 출발할 땐 기존 대책과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탈락자를 양산하는 입시교육 자체가 폭력적이다. 이 틀을 깨지 못하는 한 어떤 대책도 한계가 있다. 좀 더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73)

정부의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 학교폭력 관련 학교의 상황과 관련해서 좋은교사운동의 정병오 대표는 자체모임의 간담회 결과 상황 크게 호전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일부

71) 2012.2.6., 문화일보 (http://news.khan.co.kr), 2014년 4월 21일 방문
72) 2012.2.7, 경향신문, 앞의 글.
73) 2012.2.7, 한겨레신문, 앞의 글.

dCollection @ chosun

대책들은 오히려 학교현장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한다. 그 이유로는 위의 종합대책이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근본원인을 치유하기보다 당장 드러나는 학교폭력의 증상에 대앙하는 데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렸다.[74]

(3) 학교현장에 적응하기 어려운 정책

서울신문은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의욕이 넘친 나머지 교육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대책도 눈에 띈다. 학교폭력에 대한 전수조사는 벌써부터 교사,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만큼 일선의 여론을 좀 더 수렴해서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를 통해 유급의 길도 열어 놓았으나 교사들이 칼을 빼들지는 의문이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을 경우 학부모를 소환해 특별교육을 시키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적지 않은 학부모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고 주장했다.[75] 세계일보는 복수담임제도 교사들 간의 갈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76]

경향신문은 '밥상머리 교육 범국민 캠페인' 등의 대안들에 대해서 "부모는 늦게 퇴근하고 아이는 학원 다니느라 바쁜데 언제 함께 밥상머리에 앉을 것인가. 입학사정관 전형 핵심평가 요소로 '인성'을 반영하겠다는 것도 다르지 않다. 줄 세우기에 따른 스트레스가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그것을 또 다른 줄 세우기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다. 예술 교육을 강화하겠다지만 2009 개정교육과정 도입 이후 일부 고교에선 국·영·수 수업시간이 상당히 늘어난 상황이다. 어떤 학교에서 국·영·수 시간을 줄여 음악·미술을 가르치겠는가. 스스로 원인을

---

74) 정병오, "학교폭력을 계기로 본 인성교육, 교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사)한국학교교육연구원 등, 인성교육, 답은 무엇인가?, 「인성교육대심포지엄 자료집」, 2012.7.3, 65면.
75) 2012.2.7, 서울신문, 앞의 글.
76) 2012.2.7, 세계일보, 앞의 글. 한국일보도 복수담임제도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 "생활지도 강화를 위해 도입키로 한 복수담임제 등이 긍정적으로 작동할지도 미지수다." (한국일보, 2012.2.7).

dCollection @ chosun

인정하고도 대책은 겉돌고 있으니 격화소양(隔靴搔痒·신발 신은 채 발바닥 긁기) 격이다.” 라고 평가했다.[77]

(4) 여전히 학교 중심적인 대책과 교사의 책임과 부담만의 증가

한겨레는 “학생의 자율과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강조된 학교생활규칙 제정도 마찬가지다. 말은 교사·학생·학부모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생활규칙을 제정하고,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 바뀐 것은 학부모 의견 청취뿐이다. 자율과 책임성을 높이려면 규칙 제정과 집행에서 학생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지원자 구실을 해야 할 학교가 여전히 그 중심이다.” 라고 평하고 있다.[78]

한겨레는 “학교폭력 해소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교사가 쥐고 있다. 인성교육도 교사가 하고, 폭력과 폭력조직을 드러내고 피해자를 돌보고 가해자를 치유하는 것도 교사다. 그러나 정부는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책임과 부담만 늘렸다. 교사가 아이들을 돌보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잡무를 줄인다거나, 교사의 생활지도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방안도 없다. 복수담임제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지금 유명무실하게 시행되는 부담임제와 다를 게 없다.” [79]이 점 위의 정병호 대표 역시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80] 정부 종합 대책이 현재 학교가 처해있는 상황에 대한 고려와 학교가 안고 있는 입시경쟁교육, 과중한 행정업무 등의 부담의 짐을 덜어주려는 의지가 거의 없고 그 위에 다시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짐을 얹어주고 있다고 한다.

---

77) 2012.2.7, 경향신문, 앞의 글.
78) 2012.2.7, 한겨레신문, 앞의 글.
79) 2012.2.7, 한겨레, 앞의 글.
80) 정병오, 앞의 글, 65면.

dCollection @ chosun

제3장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 다이버전 체제

제1절 경찰다이버전의 개념과 필요성

1965년 심각한 청소년범죄 해결을 위해 미국에서 시작된 정책으로 지역 사회의 보호 및 관찰 등으로 사법처리를 대치하여 소년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 미국은 First Offender Program, Pre-trial Program 등으로, 영국은 Final Warning 제도를 통해 경미하고 초범인 소년범을 경찰 단계에서 선도 조건으로 훈방하고 있다.

다이버전의 개념과 관련하여 다이버전의 개념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제1요소로서 '공식적 절차의 이탈' 이라는 요소와 제2요소로서 '일정한 부담이나 사회적 제재' 라는 두 가지 요소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개념적 요소는 낙인방지라는 다이버전의 목표아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고볼 수 있는데, 다이버전 개념의 다양성도 결국은 이러한 두 가지 요소의 우선순위와 해석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81]

1. 부정적인 낙인효과의 방지

한 학생이 순간의 실수로 경미한 범죄를 저질러 사건이 경찰에 신고됨으로써 사건에 대한 조사는 시작된다.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경찰에서부터 여러 가지 조사를 반복하게 되고, 여러 차례 조사를 하였음에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검찰이나 법원에 송치되어 다시 보강조사 및 추가조사를 받게 되는 중복된 과정을 겪는 경우에 형사 절차의 장기화가 진행된다. 이런 이유로 조사를 받는 학생도 사법기관에 대한 반사회성이 강화되고, 주변사람들을 비롯한 자신 스스로 낙인을 찍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른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는 학습효과

81) 이승헌, "소년 다이버전의 재정립", 「소년보호 연구 제16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1, 196면.

dCollection @ chosun

를 통하여 더 큰 범죄환경 노출로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폭력범에 대한 검찰의 처분결과를 보면 전체 소년범 가운데 약 40%이상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법원에서 행하는 보호처분의 경우에도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보호자 등에 인계' 처분인 제1호 처분이 전체 보호처분 건수의 90%를 육박하는 현실을 볼 때, 경미한 비행 소년을 경찰 검찰 법원을 거치는 정식적 사법절차를 통하여 처리하고 아무런 선도 조치 없이 사회로 재유입 되는 절차를 반복하는 동안 신체구금의 부당한 장기화나 심리적 불안 증대가 초래될 수 있고, 조사의 반복으로 인하여 반성보다는 오히려 반발심을 불러 일으켜 또 다른 비행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82]

이처럼 형사제제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거의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소년범은 아직 범인성이 고착화 되어 있지 않아 경찰단계에서 초기에 다이버전 프로그램이 적용되었을 때 범죄자라는 낙인효과로부터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효과가 크다는 데에 그 필요성을 찾아 볼 수 있다.

2. 경찰 다이버전 개념의 제 1 요소 : 공식적 절차의 이탈

공식적인 절차의 이탈이라는 요소는 다이버전의 본질적 요소로서 공식적 절차의 이탈이 없으면 다이버전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공식적 절차의 이탈 없이 다이버전의 개념을 단순히 '형사처분의 최소화'로 파악한다면 모든 사회내처우가 다이버전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형사처분의 관대한 조치로 인정되는 선고유예,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벌금형까지도 다이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이버전의 개념적 확대는 다이버전의 본질인 낙인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82) 이윤호·김지연, "최근 소년사법의 경향에 따른 소년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의 모색",「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호」, 한국 공안행정학회, 2006, 325면.

dCollection @ chosun

다이버전의 독립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다이버전의 개념의 첫 번째 요소는 공식적 절차의 이탈을 의미하며, 그 공식적 절차의 이탈을 통하여 대상자가 낙인이 방지되어야 하는 목적에 충실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공식적 절차의 이탈의 시기는 '법원의 판단' 이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르면 다이버전의 범위는 훈방, 기소유예, 가정법원 소년부의 불개시 결정, 불처분 결정 등으로 범위가 한정될 수밖에 없는데, 특히 가정법원 소년부의 불개시 결정과 불처분 결정의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바, 성인과 달리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보호를 위하여 형사처분의 최소화는 물론 보호처분의 최소화[83]를 추구하고 있음으로 소년보호절차에서 경미한 사안에 대한 소년부판사의 심리불개시 결정을 다이버전의 한 수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84]

그러나 다이버전을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형사사법기관이 공식적 절차의 이탈이라고 정의한다면, 소년법상 소년부판사의 심리불개시 결정뿐만 아니라 심리 불처분결정도 다이버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심리불개시·불처분결정의 심리불개시나 불처분의 이유에 해당하는 '필요가 없거나' 의 의미는 심리나 처분의 요건은 충족되어 있으나 '비행사실 또는 요보호성에 대한 개연성이 없는 경우' 로 볼 수 있고, 심리불개시·불처분결정을 법원의 판결로 볼 수 없으므로 가정법원 소년부의 심리불개시결정 뿐만 아니라 불처분결정 또한 소년에 대한 다이버전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현실적으로 심리불개시·불처분결정이 그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논의할 점이 없다는 이유로 다이버전의 논의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2007년 소년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화해권고제도' 의 해석과 관련하여 가정법원 소년부의 불처분결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

83) 한국소년법학회, 「소년법」, 세창출판사, 2006, 35면.
84) 이진국, "소년 다이버전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형사정책연구 제17권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71면.

dCollection @ chosun

었고, 새롭게 논의되는 '청소년참여법정제도' 또한 심리불개시 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한다면 이제는 다이버전의 개념에 가정법원 소년부의 심리불개시·불처분결정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다이버전 개념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의 최소화라는 개념정의는 다이버전의 개념상의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형사처분의 최소화라는 개념보다는 '법원의 판단 이전의 공식적 절차의 이탈' 이라는 개념적 요소를 본질적 요소로 정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 진다.[85]

3. 경찰 다이버전 개념의 제 2 요소 : 일정한 부담이나 사회적 제재

다이버전의 개념적 제2요소로 '일정한 부담이나 사회적 제재' 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다이버전의 개념상의 혼란은 제1요소와 제2요소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연혁적으로 다이버전은 제1요소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나, 다이버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요소 즉 '일정한 부담이나 사회적 제재' 를 도입하게 되었고, 일정한 부담이나 사회적 제재를 통하여 다이버전 대상자의 교화·개선을 도울 뿐만 아니라, 다이버전에 대한 사회일반의 거부감을 부식시키고, 일정한 사회방위의 효과까지 갖게 하여 다이버전의 활성화에 공헌한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에 있어서 다이버전의 개념은 단순히 공식적 절차의 이탈이라는 요소뿐만 아니라 일정한 부담이나 사회적 제재의 요소 또한 다이버전 개념상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다이버전은 일정한 부담이나 사회적 제재의 요소와 관련하여 일정한 부담이나 제재의 부과여부에 따라 단순 다이버전과 개입형 다이버전으

85) 이승헌, 앞의 논문, 198면.

dCollection @ chosun

로 구별할 수 있는데, 단순 다이버전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부담이나 제재를 부과함이 없이 형사절차를 중단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비하여, 개입형 다이버전은 형사절차를 중단하는 방식을 취하는 점에서는 단순 다이버전과 동일하지만 일정한 부담이나 사회 내 제재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낙인이론에 충실하여 국가에 의한 모든 형태의 사회통제를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극단적 낙인이론가들의 입장에서는 단순다이버전만이 다이버전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하나, 공식적 절차의 이탈을 조건으로 다양한 제재를 결합한 개입형 다이버전이 형사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86] 또한 개입형 다이버전의 경우에는 성인범죄의 경우에는 이탈적 요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방위 혹은 사회보호적인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소년의 경우에는 성인과는 달리 사회바위 혹은 사회 보호적 측면에서 개입형 다이버전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다이버전이 소년에 대하여 아무런 개입 없이 사회 속으로 즉시 편입시킴으로써 오히려 범죄의 성향을 더욱 강화시킬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 다이버전 보다는 개입형 다이버전이 선호되고 있다.[87]

4. 제1요소와 제2요소의 관계

다이버전의 제1요소와 관련하여 다이버전의 제1요소를 강조한다면 법원의 유죄판결이전에 공식적인 사법절차의 회피만이 다이버전으로 볼 수 있는바, 이런 경우에 법원의 유죄판결이전에는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므로 제2요소로 부과하는 일정한 부담이나 사회적 제재는 형벌이나 형벌유사 성격의 제재는 부과할 수 없다고 본다고 본다. 검사의

86) 오영근,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7회 학술세미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115면.
87) 이호중, “소년 범죄자에 대한 경찰단계의 비범죄화 정책 제안”, 「형사정책연구 제15권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14면.

dCollection @ chosun

기소유예에 대하여 보호관찰과 같은 사회 내 처우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이버전의 제1요소를 강조하지 않는 다면 다이버전의 제2요소는 사회 내 처우라고 파악할 수도 있으므로, 다이버전의 일정한 부담이나 사회적 제재를 사회 내 처우라고 판단한다면 검사의 기소유예뿐만 아니라 모든 다이버전에 보호관찰 등의 사회내처우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로 다이버전의 제1요소를 강조한다면 다이버전의 제2요소인 일정한 부담이나 사회적 제재의 요소에는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법원의 판단이전에 일정한 부담이나 사회적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일정한 부담이나 사회적 제재는 유죄를 전제로 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의 국가사법기관이 개입하는 사회 내 처우는 부과될 수 없다고 보여 진다.

결론적으로 다이버전은 제1요소인 공식적 절차의 이탈을 전제로 하고, 그 공식적 이탈은 법원의 유죄판결 이전의 조치임으로 대상자는 무죄로 추정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무죄로 추정되는 대상자에 대하여 유죄를 전제로 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과 같은 국가가 개입하는 사회 내 처우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여 진다.

결국 다이버전의 개념 제2요소인 일정한 부담이나 사회적 제재는 사랑의 교실이나, 범죄예방위원의 선도, 화해권고, 청소년참여법정 등으로 한정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일정한 부담이나 사회적 제재의 부과여부는 다이버전의 결정기관인 국가사법기관이 결정하지만 그 운영주체는 국가 사법 기관이 아닌 민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dCollection @ chosun

제2절 외국에서의 경찰 다이버전

세계 각국에서도 소년범 조기 선도 및 재범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초범자 프로그램(First Offender Program), 재판 전 중재(Pre-Trial Intervention), 조정 서비스(Adjustment Services) 등 다양한 형태로 주(State), 군(County) 별로 실정에 맞게 시행하여 이후 재범율이 10% 수준으로 감소된 바 있고, 영국도 최종 경고제(Final Warning Scheme)도입으로 재범율이 22.5%가 감소되었고 일본에서도 경미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처리하는 미죄처분(微罪處分)제도와 경미초범 소년범에 대해 실시하는 간이송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홍콩의 경우도 18세 이하의 소년범에 대하여 기소재량권을 경정급 이상에게 부여하는 경찰재량의 분별제도를 운영하여 이후 재범율이 13.8-18% 선으로 감소한바 있다.[88]

다음에서는 외국에서 실시되는 경찰 다이버전 제도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

미국의 소년사법체계에서 가장 먼저 소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곳은 역시 경찰이다. 미국의 경찰조직 내에서 소년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과거로부터 많은 명칭이 존재해왔다. 범죄예방국이나 소년국, 청소년원조국이 그것이고, 최근에는 소년통제국이 많이 언급되고 있다.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 소년에 대한 조사 또한 이런 부서에서 실시하게 된다. 미국에서 소년사법의 첫 단계는 체포단계로 경찰에 범죄행위가 보고 될 경우 소년사법절차는 경찰관의 조사부터 시작된다. 경

88) 김항곤, “경찰단계 ‘회복적 사법제도’의 시범 운영을 통한 소년사법제도 발전 방향 모색”, 「법학논집」,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45면.

dCollection @ chosun

찰이 소년범을 체포하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소년에 대한 조사단계에서 경찰은 청소년의 비행내용,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도, 장래의 위험 및 비행 청소년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표준과 지침에 따라 사건화 하지 않고, 훈계방면 할 수도 있고, 선도프로그램 수강을 전제로 소년을 훈방하거나 소년법원 또는 검찰에 송치 할 수 있다. 또한 소년은 전문가의 심리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소년범을 사법처리하는 과정에는 경찰단계의 선도를 인정하여 신속한 사건종결로 소년이 불필요한 사법처리 절차를 겪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89]

미국의 소년담당 부서는 어떤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공통적인 역할은 탈선, 잠재적 탈선 및 탈선을 이루는 요건의 규명, 탈선과 탈선의 원인 조사사건의 심리 또는 이송,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 지역사회 조직화 등 이다. 탈선행위에 대한 경찰에서의 조사기간 동안 혐의자는 구속될 수 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관련 소년을 잘못 처리함으로써 비행자라는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경찰이 철저히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경찰의 소년 담당부서는 소년범죄자를 처리함에 있어서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고, 소년담당조사관이 조사에 참여해 관련 소년에 관한 사실과 개인 정보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사회적 배경을 조사하게 된다. 소년담당조사관은 모든 소년범죄자의 심문에 참여해야 한다.[90]

경찰의 경우 비행소년의 처리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며 이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처분은 크게 석방과 송치·위탁으로 나누어진다. 석방에는 다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우선 석방에 있어서 경고(warning)를 하는 경우와 경고 없이 석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석방에 있어서 공식보고서(official report)를 작성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89) 전지연, “경찰 다이버전의 도입 필요성과 그 내용”, 「형사정책연구 제16권 제2권」, 형사정책연구원, 2004, 196면.
90) 이수정, “경찰단계에서의 선도조건부 소년다이버전”, 「소년범 다이버전도입을 위한 전문가 참여 사례 분석집」, 경찰청, 2005, 85면.

dCollection @ chosun

경우가 있다. 이밖에 석방을 하면서 부모나 보호자에게 인계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상과 같은 구별기준에 따라 다양한 조합의 석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경고·보고서작성·부모인계 어느 것도 없이 이루어지는 석방, 경고·보고서작성과 함께 부모에 대한 인계가 이루어지는 석방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소년을 타 기관에 위탁·송치하는 경우도 여러 형태가 있다. 경찰은 우선 재사회화 교육 등 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소년을 위탁할 수 있다. 즉, 단순히 석방을 할 경우 또 다른 비행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소년은 지역사회 기관이나 복지기관에 보내어 적절한 교육이나 재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거나 일시적으로 보호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예로 소년보호소(Youth Service Bureaus), 특수학교프로그램(Special School Programs), 청소년클럽(Boys Clubs and YMCAs), 정신건강치료소(Mental Health Agencies), 약물프로그램·약물센터(Drug Programs, Detox center), 교회청소년프로그램(Church Youth Programs), 위기센터(Crisis Center), 청소년임시보호소(Drop-In Centers or Shelters for Youth), 아동복지 및 보호기관(Child Welfare and Protection Services), 소송후견인프로그램(Guardian and litem programs)등이 있다.[91]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살펴 볼 수 있다.

미국 뉴욕주 암허스트의 초범대상프로그램(First Offender Program)의 경우는 소년문제를 다루는 대안을 제시하고 참여자들에게 범죄기록이 말소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청소년가족상담소에서 암허스트 청소년위원회와 연계해 초범에 대한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1974년6월에 시작된 것으로 긍정적이고, 치료적인 방법과 중재나 집단경험 혹은 상담 등의 교육적인 방법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에 위탁된 참여자들은 15주간 상담프로그램에

91) 김재봉·이영돈, “소년범 수사 시 전문가 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치안논총」, 치안연구소, 2005, 44면.

dCollection @ chosun

참여하고 매주 2시간가량 청소년 가족상담소의 전문상담가들과 상담을 하며 참여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토론 등이 이루어진다. 이때 참여자들은 물론이고 가족 구성원 모두와 상담가가 함께 만나 지속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범죄기록이 말소될 수 있도록 혐의를 없애주는 추천서가 법원에 전달되며 이러한 훈련을 통해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가족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또한 워싱턴 D.C.의 「사회서비스센터」(Social Services Division Mission)는 컬럼비아지역의 사법행정을 돕고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호관찰과 소년 그리고 가족을 위한 사회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주로 소년치료와 보호관찰부의 소년치료팀 판사로 하여금 청소년초범자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절한 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천서를 작성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자료를 제공하고 조사를 한다. 또한 청소년치료팀은 상담을 하거나 훈방 전 감독 하에 있는 피고인이 지역사회에 적응할수있도록돕고가족과상담을통해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도록하며청소년보호관찰과가족을위한총체적인활동을제공하기위해 '청소년집중감독제' 와 '환경정보원센터' 등을 운영한다.

또 하나의 사례는 애리조나주 피닉스 경찰의 청소년 통행금지 위반 다이버전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시경찰은 청소년통행금지위반 다이버전프로그램을 1993년2월부터 시행하였는데, 이는 통행금지를 어긴 청소년에게 시행되는 다이버전프로그램으로 경찰은 근처의 통행금지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레크리에이션센터에 이들을 위탁하게 되고, 이곳에서 이들은 「통행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받으며 부모나 보호자가 올 때까지 보호받게 된다. 또한 부모나 보호자에 대한 교육도 제공되는데 부모의 역할이나 문제해결을 위한 의

dCollection @ chosun

사소통 기술의 개발 등이 주 내용이다. 이는 공원이나 레크리에이션 및 도서관 담당 부서등과 연계하여 운영되는데 현재 통행금지시설로 운영되는 레크리에이션센터로 'Desert West'나 'South Mountain'등이 있다.[92]

2. 영국

영국에서는 소년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서는 '1998년 범죄 및 질서위반법' (Crimeand Disorder Act1 998)에 의하여 다양한 재판 전 처리절차(precourtorders)가 인정 되었다. 아울러 이법은 경찰다이버전의 수단으로서 훈계(repremend)와 최종경고(final warning)를 도입 하였다. 훈계는 제1급 경범죄(minorfirstoffense)를 범한 청소년에 대하여 경찰이 부과하는 공식적 구두 경고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년비행방지팀(Youth Offending Team)에 회부되어 자발적인 비행교정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최종경고는 제1급 또는 제2급 경범죄를 범한 청소년에 대하여 경찰이 부과하는 구두 경고이다. 최종경고가 부과된 경우 훈계의 경우와는 달리 청소년비행방지팀(Youth Offending Team)에 회부되어 비행의 원인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하고 교정프로그램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러한 교정프로그램에는 피해자 가해자 조정이나 피해자나 지역사회에 대한 피해배상을 위하여 피해자와 면담 하는 것이 포함된다.[93]

구체적으로 영국의 경고제도는 비행소년 발견 시 소년경찰은 소년의 가정 및 학교관계자등과 접촉하여 소년에 대해 충분히 조사한 후 사안이 경미하고 단발성 범죄로 판단될 경우 소년의 부모와 면접을 통해서

92) 이금형, "비행소년에 대한 경찰의 다이버전 정책에 관한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46-47면.
93) 김재봉, "소년경찰과 다이버전", 「형사정책연구 제7권 제7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46면.

dCollection @ chosun

다시 죄를 범할 경우에는 기소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 후 일정한 조건을 붙여 훈방하도록 하고 있다. 경고의 내용은 “이번 사건으로 기소되지 아니 하지만, 만약 이와 유사한 사건을 다시 저지르는 경우에는 그때는 기소될 것” 이라는 경고를 한다. 경고는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지만, 이후에 범죄혐의로 기소될 경우 피고인의 성정을 드러내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경찰이 경고조치를 취하기 위한 구체적 요건은 (1)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 되어 있고, (2)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시인 하며, (3)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가 반드시 동의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찰경고의 대상 및 절차는 내무부 훈령(Home Office Circular 18/1994)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경고조치에 불응하는 피의자 역시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94]

3. 일본

일본에는 소년범에 대한 다양한 다이버전 모델이 있다.

첫째, 사소한 범죄에 대해 미죄처분微罪處分)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교통관계 업무상과실을 제외한 형법범 검거인원 가운데 대략 27%가 미죄처분을 처리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0% 정도를 절도가 차지하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제46조 단서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범죄수사규범」제98조9에 따르면 검찰이 미리 지정한 경미한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행한 후에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 처분절차를 보면 피의자에 대한엄중훈계 및 이들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 주의와 함께 서약서를 징수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피해회복방법을 강구토록 한다. 그리고 처리 시일이나 피의자 관련 사항 범죄사실의 주요내용을 매달 일괄하여 ‘미죄처

94) 표창원, “소년범 비범죄화 및 전문적 선도프로그램 도입에 대하여”, 「여경발전 및 청소년 비범죄화 청소년선도 및 전과자 줄이기 관련 세미나자료집」, 2004, 63면.

dCollection @ chosun

분사건보고서’를 작성해 검찰에 보고 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소년간이송치(少年簡易送致)제도가 있다. 경찰이나 검찰이 「소년법」 제1조1에 의거해 수사결과 범죄혐의 및 심판에 회부해야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전부를 가정재판소에 송치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으며, 가정재판소에 소년사건에 대한 전권적인 처리 권한이 부여된 제도이다. 주로 재범의 우려가 없고,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그 대상이 되며, 혹은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되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거나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없다 하더라도 우범소년으로 가정재판소의 심판에 회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 적용된다.[95]

간이송치제도는 사법경찰관이 경미한 사건에 있어서 당해 소년에 대하여 주의·훈계를 주어 처리한 뒤, 간이한 방식으로 법원 또는 검사에게 송치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경찰의 조치를 존중하여 불 개시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이다. 간이송치는 통상의 송치절차와 달리 간략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비행사실 및 발견의 단서 · 범죄의 동기 · 사후의 정상 등을 기재한 ‘소년사건 간이송치서’를 작성하여 매월 일괄하여 검사(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가정재판소(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경우)에 송치하며, 그 송치에 있어서는 신상조사표 기타 조서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범죄수사규범 제214조 제1항, 제2항). 경찰이 간이송치를 함에 있어서는 피의자에게 엄중한 훈계를 하고, 친권자 등을 소환하여 감독에 대한 주의를 주며, 피해의 회복·사죄 등 피해자에 대한 적당한 방법을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96]

사건을 송치 받은 가정재판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만을 하고 특히 문제가 되지 않는 한 불개시 결정으로써 사건을 종결하게 된다.

95) 강춘숙, “경찰 다이버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25면.
96) 범죄수사규범 제14조 제3항, 동규범 제200조.

dCollection @ chosun

이러한 간이송치제도는 경찰에 의한 다이버전의 일종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경찰이 비행소년과 친권자 등에게 훈계나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사실상 절차는 종료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간이송치제도에 대하여는 범행의 경미성에 중점을 두는 미죄처분과의 구별의 필요성, 경찰의 요보호성판단에 대한 제약의 필요성, 지역 간 불균형 시정의 필요성을 위하여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이 요청되었고, 이에 따라 1969년에 대상이 되는 경미사건의 범위를 죄종과 피해에 따라 세분화하고, 간이송치가 배제되는 경우(총포·도검의 사용, 2개 이상의 피의 사실의 존재, 비행력의 존재, 피의 사실의 부인 등) 등에 상세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97]

일본에서는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협의가 있는 소년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의 소년에 대한 수사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경찰청장 통달로 '소년경찰활동요강'을 제정해 소년에 대한 조사업무를 소년경찰의 주요업무의 한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찰에서 소년사건을 담당하는 곳은 경찰청 조직에서는 보안부 소년과이다. 그러나 소년을 직접 대면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곳은 도도부 현 단계의 경시청 이하 경찰조직인데 경시청의 경우 방범부 소년제1과에서 우범소년에 대한 자질감별 업무를 담당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보도'란 '비행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처우'인데 그러한 활동의 하나가 소년에 대한 사회 조사이다.

일본의 소년경찰은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자질감별을 실시하여 계속적인 보도조치를 취하고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사회조사를 실시하는데, 그 내용은 소년의 성격, 경력, 가정, 학교에 관한 사실의 조사이다.

한편, 비행사실에 대한 규명을 위해 수사를 실시하는데 그 내용에는

97) 김재봉, 앞의 논문, 50면.

dCollection @ chosun

연령 확인, 조치의 선별, 처우의견의 결정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사와 수사결과 소년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는 형사법원으로 송치하고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는 가정법원으로 송치한다.

일본에서는 사법경찰이 수사한 결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가 있는 소년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으로 직접 송치하도록 법원선의 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에게는 소년의 처우와 관련하여 특별한 조사를 실시 할 권한이 거의 없고, 다만 형사처분에 해당하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소년에 대해 수사 활동을 할 수 있을 뿐이다.[98]

98) 이수정, 앞의 논문, 83면.

dCollection @ chosun

제3절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경찰 다이버전 운영의 검토

1.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 다이버전 법적근거의 마련

가. 경찰 다이버전의 요건

(1) 중한 범죄가 아닐 것

경찰다이버전은 우선 경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강력범죄 내지 흉악범죄는 그 대상에서 제외 되어야한다. 살인· 방화·강도·강간 등 중한 범죄는 엄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심리 · 환경의 분석이 요구되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 처리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다.[99]

구체적으로 경찰다이버전이 허용되는 경한 범죄의 범위는 우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조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나 장기적으로는 다이버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정형으로서 벌금형이 규정된 경우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벌금형은 오늘날 사회 내 처우를 위한 방편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100] 벌금형이 가능한 범죄에 대하여 경찰다이버전이 허용되면 단기자유형의 대안으로 부각되는 벌금형의 취지와 함께 벌금형도 낙인이라는 벌금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므로 악풍의 감염방지와 낙인방지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죄명은 무거우나 그 실질이 무겁지 않은 범죄 예를 들어 죄명은 특수절도를 저질렀으나 실질은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다 호기심으로 저지른 절도의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훈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

---

99)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도 근래소년의 흉악한 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형사처벌로 대처하는 경향에 있다(최종식 “일본 소년법 개정의 최근동향Ⅱ”, 「강원법학 Vol.13」,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1, 490면).

100) 이진국, “사회내 제재의 가치와 개편”, 「형사정책연구제5권 제5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17면.

dCollection @ chosun

해[101]는 죄명이 무거우나 그 실질이 무겁지 않은 범죄에 대한 그 판단에 심층적인 분석과 조사가 필요 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짧은 시간의 판단을 요하는 경찰다이버전의 대상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소년 범죄에서 가장 범죄인 호기심으로 인한 특수절도 등을 제외하고 벌금형으로 경찰다이버전의 대상을 제한한다면, 경찰다이버전의 실효성이 적어지는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으나, 경찰다이버전은 원칙이 아닌 예외적으로 실행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가능한 요건을 제한하여 대상을 예외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102]

(2) 초범일 것

범죄 전력이 있는 소년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그에 대한 형사제재가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각별한 처우가 요구되며, 따라서 경찰다이버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원이나 검찰에서 처우 형태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드 · 마약 기타 환각물질 등 약물관련 범죄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독성 때문에 재범위험성이 높으므로 경찰다이버전의 대상에서 제외 되어야 한다.[103]

(3)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조사가 간단할 것

경찰다이버전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조사가 필요한바 이러한 조사를 위한 시간상 · 인력상 제약이 있어서 소년의 인격 ·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건만을 다루어야하며, 반면 조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나 검찰로 송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104]

---

101) 전지연, 앞의 논문, 200면.
102) 이승헌, “경찰다이버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제27권 제4호」, 2010, 179면.
103) 김재봉, 앞의 논문, 52면.
104) 경찰청, 「소년범 다이버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참여 사례 분석집」, 98-100면; 정재준 · 원혜욱,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소년보호기관의 역할 확대 및 강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

dCollection @ chosun

이러한 의미에서 경찰다이버전은 범죄혐의가 명백한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범죄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범죄혐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조사의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혐의 여부를 판단하여야할 필요가 있으므로 형사사법절차의 초기단계에서 절차를 이탈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년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다이버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경찰다이버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나.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신설

경찰훈방의 대상을 학생이 저지른 범죄, 곧 학생범죄로 하여 법제화할 경우, 그 법적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인지 문제된다. 다양한 내용이 담겨야하므로 특별법으로 새로이 제정해야한다는 견해[105]도 있다. 정치권에서 나왔던 '소년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특별법'은 이 견해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법률의 제정은 법률의 과잉시대에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106] 위에서 본 학교폭력대책법의 내용도 기존 초·중등교육법에 담을 수 있었다고 본다. 이것이 학교폭력대책법의 교육행정적 성격을 더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고 본다.

학생범죄에 대한 경찰훈방도 기존의 법률을 활용해서 법제화할 수 있다고 본다. 경찰훈방의 대상인 학생범죄에 초점을 둔다면 그 법적 근거는 소년법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

그 이유는 첫째, 학교폭력대책법과 소년법은 그 목적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학교폭력대책법의 목적은 '학생의 인권보호와 건전한 사

원」, 2003. 139면.

105) 전지연, 앞의 논문, 205면; 이윤호·김지연, 앞의 논문, 340면.

106) 박동수,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고찰: 경찰 다이버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학회 하계논문집」, 2012, 9면; 노호래, 앞의 논문, 360면.

dCollection @ chosun

회구성원으로의 육성’이고, 소년법의 목적은‘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둘째, 두 법은 그 적용대상에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학교폭력대책법의 학생은 앞서 말했듯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와 제61조의 학교의 학생인데, 이는 연령대가 소년법의 소년과 큰 차이가 없다. 현재 소년법의 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 이는 대략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연령이다.

셋째, 소년법에는 이미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과 같은 취지의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던 검찰의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가 그것이다. 그러나 대상보다 경찰훈방에 초점을 둔다면 경직법에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 적절하다.

학생범죄의 처리에서 경찰을 중심으로 가정과 학교 및 지역기관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옳다고 본다. 이는 기존 검찰 주도의 훈방체계에서 다소 벗어나서 취약한 경찰훈방을 강화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107]

다. 경직법에 “학생범죄에 대한 훈방”이라는 제목의 제8조의1 신설

경직법에 “학생범죄에 대한 훈방” 이라는 제목의 제8조의 1을 신설하여 학생범죄에 대한 경찰훈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그런데 이에 앞서 아래와 같이 검토 및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다.

(1) 소년법의 개정

(가) 우범소년에 대한 규정의 삭제와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개념 정비

앞서 말했듯이 먼저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한 경찰의 소년부로의 송치의무와의 모순을 해결해야한다. 그런데 이에 앞서 정리해야할 것이

107) 윤동호·김은경, 앞의 논문, 55면.

dCollection @ chosun

있다. 우범소년에 대한 국가개입을 계속 유지할 것인 지이다. 소년법 제4조 제3호는 우범소년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③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소년법에서 우범소년에 대한 규정은 삭제해야한다고 본다. 우선 우범소년이란 개념이 모호하다. 그리고 이런 차원의 범죄예방활동은 경직법 제6조[108]에 근거해서도 할 수 있고, 이는 경범죄처벌법의 아래 범죄에 근거한 단속대상에도 근접해있으므로 촉법소년의 범주로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에 대한 개념도 정리해야한다고 본다. 소년법의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은 모두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고, 연령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현행 소년법 제4조 제1항이 제1호는 "죄를 범한 소년"으로, 제2호는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으로 각각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제1호는 "죄를 범한 14세 이상인 소년"으로, 제2호는 "죄를 범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으로 각각 규정하고, 제3호는 삭제해야 한다.

(나) 촉법소년의 학생범죄에 대한 경찰의 소년부로의 송치의무의 개정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한 소년법 제4조 제2항은 '촉법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고 개정하여 경찰의 재량을 인정함으로써 학생범죄에 대한 경찰훈방이 가능해질

108)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dCollection @ chosun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형소법의 개정은 불필요

형소법 제196조 제2항이 규정한 경찰의 범죄수사 개시 및 진행의무와 범죄소년의 학생범죄에 대한 경찰훈방은 모순이 아니라고 본다. 학생범죄에 대한 경찰훈방을 하더라도 범죄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훈방의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범죄심리사 등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도움도 받아야한다.[109]

따라서 훈방은 입건 이전 단계의 조치라는 이유로 수사의무와 훈방은 모순이라는 지적[110]은 옳지 않다. 입건은 흔히 관행적으로 수사 이전 단계의 개념으로 사용하지만, 훈방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훈방에 관한 판례[111]의 취지에 따르면 오히려 위법사실을 조사조차 하지 않고 훈방하면 직무유기죄가 된다. 더욱이 입건을 수사 이후 개념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 사용론의 관점에서 보면 문언은 그것의 관행적 의미를 넘어서 새로운 개념을 획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마치 검사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듯이, 경찰도 수사 후 입건 여부를 판단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문언의 관행적 의미에 억매일 필요가 없다. 만일 입건의 관행적 의미가 문제라면 훈방이란 개념을 사용하면 된다. 같은 맥락에서 범죄소년의 학생범죄에 대한 경찰훈방과 형소법 제195조가 규정한 검사의 범죄수사의무도 모순이 아니라고 본다.

경찰훈방의 대상이 되는 범죄라고 해서 검사의 수사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같은 차원에서 경찰의 수사 후 검찰로의 관계서류 및 증거물 송부의무와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학생범죄에 대한 경찰훈방의 법제화는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109) 이춘화, “소년형사사건 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학 제21권 제1집」,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2, 101면.
110) 김태명 교수의 「경찰단계에서의 형사사법처분 도입 방안」 발표에 대한 오치훈 변호사의 지적이다.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선진화방안 학술 세미나 자료집, 2011. 10. 14, 34면 참조.
111)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117 판결.

dCollection @ chosun

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찰의 수사종결권과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양립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경찰이 범죄소년의 학생범죄에 대해 훈방권을 행사한 후 이와 관련한 서류나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하고 또 이와 관련하여 검찰의 지휘권 행사의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은 경찰훈방의 취지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훈방권 행사의 오류나 남용에 대한 우려를 떨어뜨리는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직법에 학생범죄에 대한 경찰훈방권을 신설하더라도 형소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112)]

(3) 학생범죄에 대한 정의 규정의 마련: 경직법 제8조의1 제1항

이런 상태에서 먼저 학생범죄에 대한 정의를 제8조의1 제1항에 다음과 같이 둬서 경찰훈방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학생범죄란 소년법의 소년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에 재학 중에 범한 죄를 말한다.” 이런 정의규정에 따르면 학생범죄는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학생이 범한 죄를 말한다. 따라서 이는 대검찰청이 펴내는 범죄분석의 학생범죄와 다르다. 범죄분석의 학생범죄는 학생이 범한 죄로서 연령과 무관하다.

(4) 학생범죄에 대한 경찰훈방의 조건의 마련 : 경직법 제8조의1 제2항

학생범죄에 대한 경찰 훈방권은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단의 종국적 회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범죄자는 소년이기도 하므로 경찰훈방을 받더라도 소년법의 처리절차로 넘겨질 가능성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럼 학생범죄자와 그 법정대리인

112) 윤동호,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법제화 방안”, 「비교형사법연구 제15권 제1호」, 비교형사법학회, 2012, 387면.

dCollection @ chosun

의 동의를 조건으로 경찰훈방이 가능한 것으로 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학생범죄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훈방절차를 선택함으로써 더 중한 절차라고 볼 수 있는 소년법의 처리절차의 잠정적 회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사건 처리절차를 두고 범죄자와 국가가 협상을 하는 것, 곧 절차협상의 형태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범죄에 대한 경찰 훈방권은 수사권한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는 잠정적이기 하지만 사법적 판단을 대신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법절차와 탄핵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후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런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려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통한 통제로는 부족하고 훈방, 곧 다이버전의 취지가 살아나도록 경찰훈방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범죄자가 예컨대 경찰이 실시하고 있는 '사랑의 교실'과 같은 개선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피해자와 화해하는 것을 조건으로 경찰 훈방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범죄에 대한 경찰훈방의 조건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경직법 제8조의1 제2항에 조문화할 수 있다. "경찰관은 학생범죄자가 개선 또는 화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훈방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범죄자와 학생범죄자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개선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피해자와 화해를 경찰훈방의 조건으로 삼게 되면, 학교폭력대책법이 규정한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113]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114] 학교폭력대책법에 따르면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제13조), 학교폭력대책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장이 다음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① 해당 학교의 교감, ② 해당

113)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데, 분쟁 조정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과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며,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제18조).

114)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김현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법교육 연구 제5권 제1호」, 2010년 6월, 80면.

dCollection @ chosun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③ 학교폭력대책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④ 판사·검사·변호사, ⑤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⑥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⑦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제12).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② 피해학생의 보호, ③ 가해학생에 대한선도 및 징계, ④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학생범죄에 대한 경찰훈방의 절차의 마련 : 경직법 제8조의1 제3항

학생범죄에 대한 경찰훈방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학교폭력대책법이 규정한 자치위원회가 개입하도록 함으로써 경찰훈방권의 본질적 한계를 극복하고 그 취지와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개입의 구체적 형태는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받은 후에 경찰훈방의 행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범죄에 대한 경찰훈방의 이런 절차는 경직법 제8조의1 제3항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조문화할 수 있다. “경찰관은 제2항의 훈방을 결정하기에 앞서 학교폭력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이처럼 경직법에 규정하게 되면 학교폭력대책법 제13조 제2항의 자치위원회 소집사유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다음가 같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5-1. 경찰훈방에 관한 의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자치위원회가 이런 형태로 경찰훈방 과정에 개입하게 되면 소년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한 학교장 등의 소년부통고제도[115]는 그 활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다.

---

115)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dCollection @ chosun

학교장에게는 경찰훈방절차나 소년법의 처리절차 하나를 선택할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셈이고, 경찰훈방절차가 소년법의 처리절차보다 완화된 절차이고, 경찰훈방절차는 자치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는 형태이므로, 이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훈방과 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이처럼 긴밀히 연계되면 자치위원회의 기능이전반적으로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가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내리는 조치가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경찰이 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받고 또 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제12조)" 는 규정에 근거해서 경찰훈방을 위해 경찰이 조사한 내용에 알게 되는 업무교류과정을 갖기 때문이다. 또한 가해학생에게는 경찰훈방과 자치위원회의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의미도 갖기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결국 경찰훈방이 도입되면 경찰훈방과 개선 내지 화해 프로그램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유기적으로 연동해서 움직여서 각 제도의 효과가 현저히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116]

라. 경찰 다이버전 필요성

형사제재의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다이버전은 필요하며, 앞의 소년범에 대한 사법처리절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제도하에서도 소년범에 대한 사회 내 처우는 가능하다. 특히 검사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이러한 소년범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표준적인 모델에 해당한다. 검사의 조치단계에 앞서 경찰단계에서도 범죄소년에 대한 다이버전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소년범죄의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년범의 수는 감소하고

116) 윤동호, 앞의 논문, 388면.

dCollection @ chosun

있으나, 소년범의 재범율은 10년 전의 20% 정도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5% 수준에 다다른 이후 계속 그 상태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기존의 재범방지책이나 소년범죄에 대한 처우가 적절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주며, 따라서 효율적 재범방지책 필요하다. 물론 여기서 소년범의 재범방지책으로 기존의 소년사법제도나 처우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이를 개선하거나 보완할 필요도 있을 것이나, 이와 더불어 새로운 사회 내 처우제도인 경찰 다이버전을 도입하여 소년의 재범방지를 위한 보다 다양한 제도의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117]

둘째, 사법체계에서 소년에 대한 사법정책은 기본적으로 성인과 달리 처벌이 아니라 선도 중심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의 범죄소년에 대한 사법처리는 검사가 행하며, 검사는 본질적으로 범죄의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기 때문에 소년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도 소년의 인격이나 환경보다는 범죄사실의 경중을 중시하고 선도가 아닌 처벌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년사법체계(특히 경미한 범죄를 범한 소년범의 처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118]. 이러한 점은 범죄분석 2002(대검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2002년 전체 소년범 115,423명 중 53.2%인 61,403명을 불기소 처분하였으며, 불기소처분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인 46,984명(전체소년범중 40.7%)을 기소유예 처분하였다. 그러나 여기의 기소유예처분 소년범 가운데 6,479명만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행함으로써 15%만에 선도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85%는 별다른 선도 조치 없이 사회에 복귀하도록 하여 재범율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119]

셋째, 2002년 소년보호사건의 77.5%를 1호 처분으로 아무런 선도대책 없는 이전환경인 보호자에게 인계(2, 3호 처분 병합)하고,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이나 소년원에 위탁 또는 송치한 경우는 12.6%에 그치고 있어 법원의 보호처분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보호

117) 전지연, 앞의 논문, 194면.
118) 오영근·최병각,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84면.
119) 전지연, 위의 논문, 195면.

dCollection @ chosun

처분을 부과하는 경우에 보호관찰관이 소년범에 대한 선도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보호관찰관이 현재 1인당 연 600여명(성인포함)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너무 업무가 과중되어 있고 성인과 청소년을 차별없이 보호관찰을 함으로써 다소 전문성을 결하게 된다.[120]

넷째, 소년범을 사법처리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의 반복적 조사, 학교와 지인으로부터 다소간의 심리적·장소적 격리 및 이로 인한 낙인효과 등으로 해당 소년이 자포자기하는 등 사법처리과정에서 역효과를 초래하여 제2의 범죄를 촉진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소년범죄에 대하여 조사과정의 일회성 내지는 단순화와 전문화 그리고 신속화를 통하여 소년의 심적 동요를 최소화하고 선도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통해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처우가 필요하다.

2. 우리나라의 학교폭력 경찰 다이버전의 실무상 인정되는 범위

가. 사안에 따른 맞춤형 사건처리[121]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범, 일진관련 사건의 경우는 강력하게 처벌하되, 사안이 경미하거나 초범인 경우에는 선도심사위원회에서 사안에 따라 즉심・훈방토록 하여 처벌보다는 선도 중심으로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 아울러, 사랑의 교실(전문기관 위탁) 및 경찰관서 자체 선도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여 초기 단계부터 소년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개입하고 있다.[122]

---

120) 최근에 법무부는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보호관찰 등을 선고하기 위해 주로 소년범에 대해서만 실시해 온 '판결 전 조사제도'를 성인범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여, 이런 내용이 담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하여, 이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의 업무는 더 가중되리라 보여 진다.

121) 운영성과('12년)-경찰백서.2013.
▶ 선도심사위원회 : 760회 개최 및 즉심 86명, 훈방 1,550명 실시.
▶ 선도프로그램 : 사랑의 교실 8,531명, 자체선도 프로그램 9,164명.

122) 경찰청, 경찰백서, 2013, 99-100면.

dCollection @ chosun

<도표-11> 경미 소년범 처리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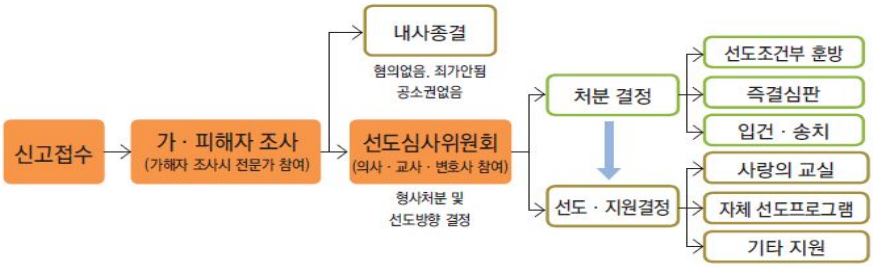

나. 학교폭력 자신신고 및 집중단속기간 운영

2012년 학교폭력 피해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3.19~4.20, 10. 22~11.30)'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선도 교육 이수 후 최대한 선처하여 사회적 낙인 및 재비행 방지효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자진신고기간이라도 △상습적이거나 사안이 중대한 일진 폭력 △ 장기간 지속된 폭행·협박·갈취행위 △ 신고 이후 보복폭행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하여 엄중 처벌하였다.[123]

<표-1> ' 12년 운영 성과

총계	자진신고						피해신고 및 단속						
	소계	불구속	소년부 송치	즉심	훈방	기타	소계	구속	불구속	소년부 송치	즉심	훈방	기타
2,811	744	68	13	9	641	43	2,037	21	1,176	237	15	279	309

다.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경찰은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 학교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2012년 6월 학교 전담경찰관 발대식을 실시하였다.[124]

123) 경찰청, 위의 책, 99면.

dCollection @ chosun

〈표-2〉 ’12년 지역별 학교전담경찰관 배치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14	75	29	21	21	16	14	9	101	27	17	21	46	31	36	43	7

〈표-3〉 ’12년 학교전담경찰관 주요 활동성과

범죄예방교육		학교폭력 신고 접수(건)	사건처리(회)		사후관리(명)		교사 활동 지원(건)	
회수(회)	인원(명)		선도심사위원회 참여(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참여(회)	피해학생 멘토링	가해학생 선도	학생 지도	교권 확립
15,175	2,026,015	4,157	528	5,258	7,849	7,111	841	239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학교와 협력	생활지도교사와 핫라인 구축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적극 해결
예방 교육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학교전담경찰관이 소규모 학급단위로 학생 눈높이 예방교육 전담
자치위 참석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 형사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분쟁조정 및 가해학생 선도프램 연계 등
학생 상담	연락처를 적극 홍보하여 전화 · 카톡 · SNS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고를 유도하고 가 · 피해학생 상담을 통해 학교 적응 지원
117 해결	전담경찰관 명단을 117센터와 공유하여 구체적 피해사실 및 사후관리 필요시 전담경찰관에 연계하여 대면상담 및 보호 · 지원

124) 경찰청, 앞의 책, 100면.

dCollection @ chosun

제4장 경찰 다이버전의 문제점과 방향제안

제1절 운영상 경찰다이버전의 문제점

1. 경찰다이버전의 문제점

소년에 대한 경찰다이버전은 첫째, 소년범죄에 대하여 조기에 개입하여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낙인효과나 기타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둘째, 개입형 다이버전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절차보다 행위자의 재사회화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으며, 셋째, 사법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넷째, 개입형 다이버전을 범죄 피해자 보호정책과 결부시키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에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 다이버전은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 다이버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실무상으로만 인정되는 이유는 ① 소년법등 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②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건의 종결권은 검사에게 있으며[125] ③ 특히 개입형 다이버전에 의하여 경찰다이버전에 선도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에 합치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126] 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다이버전에 대한 논의는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여러 장점을 갖고 있는 경찰다이버전의 허용여부와 허용할 경우 남용가능성이 있는 경찰다이버전의 적절한 통제방안[127]과 경찰다이버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전문성에 대한 논의[128]가 주된 내용이라고 주장하나 실질

125) 오영근, “개정소년법의과제와전망”, 「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19면.
126) 김재봉, 앞의 논문, 38면.
127) 김보환, “소년 형사사법 절차상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치안논총제집」 치안연구소 1992, 195면.
128) 김재봉, 위의 논문, 38면.

dCollection @ chosun

적으로는 현재 시행되는 경찰다이버전자체의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보다는 경찰다이버전의 법적 근거의 유무에 대한 논의가 논의의 핵심이라고 보여 진다.[129]

2. 경찰의 전문성과 전담인력의 부족

경찰에서도 범죄소년의 처리는 성인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수사경찰이 담당하고 촉법·우범소년은 소년경찰이 담당해 오던 시스템을 소년수사전담반을 설치해 소년관련 업무의 처리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전문소년경찰요원의 확보와 관련 법령의 미비로 인해 비행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처우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비행소년에 대한 담당 경찰관의 의식 또한 사법처리 내지는 훈방 위주로만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해 지금까지의 경직된 업무관행을 엿볼 수 있다.[130]

3. 관계기관의 시스템 미비

경찰다이버전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관계기관의 연계시스템이 잘 운영되어야 한다. 사실상 소년보호에 관한 책임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된 책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육성보호업무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는 다이버전 대부분 선도프로그램이 수반되기 때문에 관계 기관과의 협력적인 시스템에 구축되어 있을 때만 그 기능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은 각 부처에서 운영되고 있는 선도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 등을 통해

129) 이승헌, 앞의 논문, 172면.
130) 김종수, “소년경찰 업무에 대한 경찰관의 의식 및 역할”, 「한국공안행정학 회보 제25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208면.

dCollection @ chosun

비행소년 선도를 위한 부처·단계별 구체적 역할 분담을 규정하여 선도프로그램을 연계한 통합형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찰서 단위별로 각 지역 교육기관의 정기적인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전문 선도단체를 연계하는 것이다.

dCollection @ chosun

제2절 운영상 경찰 다이버전의 방향제안

1.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다이버전의 필요성

다이버전, 곧 훈방의 취지를 살리고 그 효율성을 제고하려면 취약한 경찰훈방을 강화하여[131] 검찰주도의 현행 훈방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이른바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 대한 경찰훈방은 더욱 필요하고, 절실하다. 가정과 학교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가해학생은 개선과 변화의 가능성은 매우 큰 반면 형사사건이나 보호사건의 처리절차에 연루됨으로 인한 낙인의 효과도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학교폭력사건의 처리에 최전방에 있는 경찰의 훈방을 통해서 가해학생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관심과 배려를 받으면서 종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며 자신이 주체가 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이 형사 사건이나 보호사건 처리절차에 휘말리면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학교와 지역공동체 심지어 가정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 밖으로 완전히 밀려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자신이 주체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단 한명의 가해학생에게라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 제도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132] 경찰단계에서의 다이버전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근거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소년들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소년범을 사법처리하는

---

131) 소년이 저지른 경미범죄에 대한 경찰의 훈방권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많다. 예컨대 강동욱, “소년사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19집」,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8, 149면; 김재민, “경찰의 소년법 다이버전 정책에 관한 고찰-회복적 사법 이념의 반영 가능성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15호」, 2010, 237면; 이영란, “소년사법절차에 관한 연구”, 「소년보호연구 제15호」, 2010, 19면. 다른 주장은 김태명, “경찰단계에서의 형사사법처분 도입 방안”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선진화방안 학술 세미나 자료집, 2011. 10. 14, 5면의 각주 4 참조.

132) 윤동호·김은경, 앞의 논문, 32면.

dCollection @ chosun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의 반복적인 조사, 학교와 지인으로부터 다소간의 심리적 · 장소적 결리 및 이로 인한 낙인효과 등으로 해당 소년이 자포자기하는 등 사법처리 과정에서 역효과를 초래하여 제 2의 범죄를 촉진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소년범죄에 대하여 조사과정의 일회성 내지는 단순화와 전문화 그리고, 신속화를 통하여 소년의 심적 동요를 최소화하고 선도를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통해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처우가 필요하다.

둘째로 검사 · 판사의 업무량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형사사법의 제 모습을 찾는데 보다 많은 인적 · 물적 자원을 투입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만, 국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분명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사건 유입량의 통제이다. 들어오는 사건이 있으면 심리가 종결되어 나가는 사건이 있다. 현재의 파행 상태는 우선 입력 부분의 과잉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들어온 사건을 처리하는 통로가 협소 하다.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관한 처리의 통로로 우리나라처럼 단일의 프로세스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셋째로 경미한 소년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 이다. 2008년도 소년범죄자의 검찰 처리현황에서 나타났듯이 전체 사건의 65.9%가 불기소처리가 되며 이 가운데 46.7%가 기소유예로 처리 되었다. 또한 보호사건의 경우도 전체 30,222건 중 6,214건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소년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굳이 검찰과 법원이라는 시스템을 거쳐야 하는가, 의문이 들게 한다. 따라서 경미한 소년범에 대한 사건은 경찰단계의 다이버전을 통하여 신속하게 처리 될 필요가 있다.

넷째로 형사 제재의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다이버전은 필요하다. 현재의 제도에서도 소년범에 대한 사회 내 처우는 가능하다. 특히, 검사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이러한 소년범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표준적인 모델에 해당한다. 이와 더불어 검사의 조치 단계에 앞서 경찰의 범죄소

dCollection @ chosun

년에 대한 다이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기존의 형사사법 제도하에서도 재범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우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그 대안으로 경찰단계의 다이버전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다.[133]

2.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 다이버전의 한계

현행 다이버전체계에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경찰 다이버전은 한계가 있다. 크게 3가지다. 첫째, 현행 경찰다이버전의 실무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경찰다이버전이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취약하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다이버전이 가능해지려면, 기본적으로 현행 경찰다이버전실무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미범죄와 소년법의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보다 확대되어야 하고, 그 근거가 법률에 명문화 되어야한다.

둘째, 이 때 소년법 제4조에 규정된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한 경찰의 소년부로의 송치의무와의 모순을 정리해야한다. 또한 형사소송법(개정 2011. 7. 18, 시행 2013. 1. 1, 약칭하여 형소법) 제195조의 검사의 수사의무와 제196조 제2항의 경찰의 범죄수사개시 및 진행의무 등과 모순은 없는지 검토해야한다. 더 중요한 것은 경찰은 검찰을 넘어서야 한다. 제196조 제1항은 여전히 검찰에게 경찰의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인정하고 있고, 제196조 제4항은 범죄수사 후 경찰은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검찰에게 송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이 수사종결권의 의미를 갖는 경찰다이버전권을 행사하는 것은 형소법의 이런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134]도 있기

133) 강춘숙, 앞의 논문, 17-18면.
134) 김태명 교수의 「경찰단계에서의 형사사법처분 도입 방안」 발표에 대한 이주원 교수와 오치훈 변호사의 지적이다.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선진화방안 학술 세미나 자료집, 2011. 10. 14, 30면과 33면 이하 참조.

dCollection @ chosun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경찰다이버전을 법제화하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예상되는 검찰의 반대를 넘어서야한다.

셋째, 수사권한 내지 형사사법망의 확대라는 비판을 넘어서야 한다. 특히 개입형 경찰다이버전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검찰다이버전에도 있으며, 이런 문제 때문에 소년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찰의 개입형 다이버전인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는 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이런 동의는 유죄판결의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자발적이므로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135]도 있다.

그러나 범죄자의 동의나 의사를 조건으로 완화된 형사절차를 여는 것은 이른바 절차협상이다. 이런 절차협상은 형사사법기관이 형사사건의 처리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서, 현대 형사사법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현행법에 있는 예컨대, 약식명령에 불응할 것을 조건으로 정식절차로 이전하도록 한 것, 범죄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배심절차를 개시하는 것 등도 절차협상의 한 형태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경찰다이버전도 가해학생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여 수사권한의 확대라는 비판을 완화해야한다. 특히 가해학생이 개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개입형 경찰다이버전으로 법제화할 경우에는 개선프로그램을 재사회화와 재범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야 수사권한이나 형사사법망의 확대라는 비판이 완화될 수 있다. 예컨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사이의 화해도 그런 개선프로그램의 하나가 될 수 있다.[136]

135) 오영근·최병각, 앞의 논문, 89면.
136) 윤동호·김은경, 앞의 논문, 34면.

dCollection @ chosun

제5장 결 론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낙인방지와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다이버전이 필요하며, 형사사법절차의 초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찰 다이버전은 다른 다이버전에 비하여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 다이버전은 명확한 입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적 근거가 없는 경찰 다이버전은 실무상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예로 우선 경찰에서 처리를 종결할 수 있는 범위는 검찰이나 법원으로의 송치대상이 될 수 없는 불량소년과 현재의 범칙금 통고 대상자로 제한 할 필요가 있으며, 나머지의 경우에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으로 넘겨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단계에서 단순 훈방조치되는 불량행위 소년들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를 선별하여 재비행 방지 프로그램에 의한 효과적인 재범방지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현재 경찰단계에서 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행 예방대책의 활성화와 내실화 관련 문제점들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 이후 새로이 경찰권한의 확대와 창설 등에 관하여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 다이버전의 요건과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실무상 인정되는 경찰 다이버전의 경우 법적근거에 관하여 해석상 죄형법정주의를 통하여 이정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입법적 조치를 위해서는 실무상 인정되는 경찰 다이버전의 자의적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적·사후적 통제가 필요하며, 각 단계별로 전문가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경찰 다이버전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문제점을 제거하여 경찰 다이버전에 대한 우

dCollection @ chosun

려와 불신을 해소시키는 실질적인 노력만이 경찰 다이버전을 입법화할 수 있는 환경적 토대를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사기관에 의한 다이버전의 활성화는 국가형벌권의 엄격한 집행만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통한 정의의 확립이라는 전통적인 형사사법모델로부터 탈피를 의미한다. 그렇다고 형사사법절차에서 다이버전의 활성화가 범죄의 효율적인 예방으로만 나타나지는 않는다.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자를 찾아내어 이를 처벌하고자 함에만 목적을 둘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학교폭력으로 이라는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넓은 의미에서 법질서를 수호하는 치안기관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한다. 최종적으로 모든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에 의한 다이버전의 활성화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효율적인 처리, 가해자와 피해자의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권장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폭력으로 인한 형사사법사건은 기존의 전통적인 형사사법절차를 고집하기 보다는 다이버전이라는 절차에 관심을 기울여야하고, 학교폭력의 가해자를 위한 교정·교화는 교정기관 만의 역할이 아니라, 가해자를 조속히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은 형사사법기관 전체에 맡겨진 임무라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다이버전의 활성화를 위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경찰, 검찰, 교정기관등의 모든 형사사법기관이 추구하는 공통목표는 학교폭력을 줄이고 다수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법적정의를 추구하는 점에서 동일하고 수사기관에 의한 다이버전 활성화 방안도 공유하고자 할 때 모든 형사사법기관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달성될 것이다.

dCollection @ chosun

참 고 문 헌

【국내논문】

1. 단행본

경찰청, 경찰백서. 2013

_____, 「소년범 다이버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참여 사례 분석집」

과학기술위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12. 2.

교육인적자원부, 2005 학교폭력 유형별 대처사례집, 2005.

문용린 외 공저,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학지사, 2006.

법무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2012.

한국소년법학회, 「소년법」, 세창출판사, 2006.

2. 논 문

강동욱, “소년사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제19집」,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8.

강춘숙, “경찰 다이버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김보환, “소년 형사사법 절차상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치안논총제집」, 치안연구소, 1992.

김재민, “경찰의 소년법 다이버전 정책에 관한 고찰-회복적 사법 이념의 반영 가능성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15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0.

dCollection @ chosun

김재봉・이영돈. “소년범 수사 시 전문가 참여제도에 관한 연구”,「치안논총」, 치안연구소, 2005.
김재봉, “소년경찰과 다이버전”, 「형사정책연구 제7권 제7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김종수, “소년경찰 업무에 대한 경찰관의 의식 및 역할”,「한국공안행정학 회보 제25호」,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김창군・임계령,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법학연구 제38권」, 한국법학회, 2010.
김태명, “경찰단계에서의 형사사법처분 도입 방안”,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선진화방안 학술 세미나 자료집, 2011. 10. 14.
김항곤, “경찰단계 ‘회복적 사법제도’의 시범 운영을 통한 소년사법제도 발전 방향 모색”,「법학논집」,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김혜경,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접근의 제한”,「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곽영길,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노성호, “학교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범죄방지포럼 제5호」, 한국범죄방지재단, 2004.
노호래, “청소년범죄자에 대한 경찰단계의 다이버전(Diversion)”,「법학연구 제19집」, 한국법학회, 2005. 10.
박동수,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고찰: 경찰 다이버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학회 하계논문집, 2012.
박병식, “학교폭력대책의 올바른 방향과 법률적 과제”,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 국회좋은교육연구회 공동주최, 학교폭력대책의 올바른 방향과 법률적 과제, 2005. 1.11.
박상도, “청소년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dCollection @ chosun

박윤기,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오영근,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17회 학술세미나, 1995.

_____, “개정소년법의과제와전망”,「형사정책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오영근・최병각,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연구총서 Vol. 1993 No. 15」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윤동호・김은경,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법제화 방안-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법적 근거와 절차마련 방안”,「연구총서 Vol. 2012 No. 8」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윤동호,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훈방의 법제화 방안”, 「비교형사법연구 제15권제1호」, 비교형사법학회, 2012.

이금형, “비행소년에 대한 경찰의 다이버전 정책에 관한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이상균,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이수정. ″경찰단계에서의 선도조건부 소년다이버전″,「소년범 다이버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참여 사례 분석집」, 경찰청. 2005.

이승헌, “소년 다이버전의 재정립”,「소년보호 연구 제16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1.

_____, “경찰다이버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총 제27권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이영란, “소년사법절차에 관한 연구:소년경찰의 다이버전을 중심으로”,「소년보호연구 제15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0.

이윤호, 김지연, “최근 소년사법의 경향에 따른 소년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의 모색”,「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호」, 2006.

dCollection @ chosun

이진국, “소년 다이버전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_____, “사회내 제재의 가치와 개편”,「형사정책연구 제5권 제5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이주호, “성비행을 통해 본 학교폭력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 국회좋은교육연구회 공동주최, 학교폭력대책의 올바른 방향과 법률적과제, 2005. 1. 11.

이춘화, “소년형사사건 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한양법학 제21권 제1집」,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2.

이호중, “소년 범죄자에 대한 경찰단계의 비범죄화 정책 제안”,「형사정책연구 제15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임영식,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청소년학연구 제5권 제3호」, 한국청소년학회, 1998.

전지연, “경찰 다이버전의 도입 필요성과 그 내용”, 「형사정책연구 제16권제2호」, 형사정책연구원, 2004.

정병오, “학교폭력을 계기로 본 인성교육, 교사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사)한국학교교육연구원 등, 인성교육, 답은 무엇인가?(인성교육대심포지엄 자료집), 2012.7.3.

정재준・원혜욱,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소년보호기관의 역할 확대 및 강화방안”,「연구총서 Vol.2003 No.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정한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경희법학 제44권 1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조종태,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방안-법무부 추진방안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34-3호」, 한국법학원, 2013.

최종식 “일본 소년법 개정의 최근동향Ⅱ”,「강원법학 Vol.13」,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01.

dCollection @ chosun

표창원, “소년범 비범죄화 및 전문적 선도프로그램 도입에 대하여”, 「여경발전 및 청소년 비범죄화 청소년선도 및 전과자 줄이기 관련 세미나자료집」, 2004.

【외국문헌】

Archer, J. & Browne, Human Aggression: Naturalistic Approaches, Routledge, 1989.

Aster, R. A. Behre, W. J. Fravill, K. & J. M. Wallace, “Perceptions of school violence as a problem and reports of violent events, 1997; A national survey of school social workers”, Social Work, 42(1).

Donovan, J. & Jessor, R. Structure of problem in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u, 53, 1985.

Michael. F. Leslie, B. Scott, P. Jessica, M. & Sharon, B., Factors associated with school psychologists percoptions of campus violence, Psychology in IN Schools, 33(1), 1996.

dCollection @ chosun